

전통사상의 재조명

일시: 2013년 4월 26일 오후 2:00 - 5:00

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106호

주최: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 국 / 동 양 정 치 사 상 사 학 회

2013년 춘계학술회의 진행순서

전통사상의 재조명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장 이희주

14:10-17:00 발표 1, 2

사회: 신복룡(건국대)

발표 1: 6세기 초 신라의 정치적 과제와 전륜성왕사상 : 법흥왕의 치적을 중심으로
(윤세원, 인천대)

발표 2: 춘추(春秋)의 이면(裏面): 『春秋左氏傳』에 내재한 도덕과 전쟁의 정합성
(윤대식, 한국외대)

토론 : 참석자 전원

17:00-17:10 폐회식

17:10- 저녁식사

목 차

6세기 초 신라의 정치적 과제와 전륜성왕사상:
법흥왕의 치적을 중심으로(윤세원, 인천대) 1

춘추(春秋)의 이면(裏面):
『春秋左氏傳』에 내재한 도덕과 전쟁의 정합성(윤대식, 한국외대) 20

6세기 초 신라의 정치적 과제와 전륜성왕사상: 법흥왕의 치적을 중심으로

윤 세 원
인천대

- I. 머리말
- II. 6세기 초 신라의 정치적 과제
- III. 법흥왕의 치적
- IV. 전륜성왕개념으로 조망해 본 법흥왕의 치적
- V. 맺음말

I. 문제의 제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신라는 무교의 정신적 뒷받침 속에서 부족연맹 수준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부족연맹이라는 통치체제와 전통사상은 더 이상 신라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감당해내기는 커녕 지체시키는 舊穀의 기능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신라는 이러한 구곡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다.¹⁾ 소백산맥을 경계로 한반도의 동남부라는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은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150여년 정도 뒤 늦게 이러한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삼국이 부족연맹체제에서 고대국가로 진입한 시기는 달랐지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고, 불교의 수용이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교의 수용과 공인은 국가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당시의 사상적 구곡을 타파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불교에서 발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1) 고익진, 「韓國古代의 佛敎思想」, 佛敎私學會 編., 『初期韓國佛敎敎團史研究』, (서울: 민족사, 1992), pp.31~32

었다.²⁾ 특히 신라의 경우는 6세기 전반까지도 최고 통치자가 국정의 현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6부의 수장들과 의논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는 상황이었다.³⁾ 불교가 전래되고 수용되던 시기의 신라는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를 통하여 6부체제의 청산을 모색하던 때였다. 그러므로 신라왕실로서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귀족세력에 대한 왕권의 우월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념체계의 수립도 필요했다.⁴⁾ 이러한 상황인식으로 신라의 불교공인 문제를 조명할 때 법흥왕이 불교공인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실질적인 이유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불교의 수용을 통해 정치통합을 성취한 경우라고 본다면,⁵⁾ 불교를 먼저 수용한 고구려와 백제를 제치고 왜 신라만이 성공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질문의 대답을 불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사상으로 해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시도이다. 붓다는 동 시대에 재위 중이었던 인도대륙이 여러 왕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충고를 하고 그들의 자문에 응했는데, 그 과정과 내용들이 다수의 經들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불교의 수용을 통한 신라의 정치적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전해지는 다양한 정치적 가르침들 중에서 신라에 수용된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주체의 전략 등이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의 전래는 당연히 되어왔던 기존의 사회구조와 질서의 정당성을 다시 묻게 한다. 법흥왕의 불교공인은 새로운 종교의 등장에 따른 권력질서의 재편과 이후 신라정치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한 일이었다. 이 연구는 불교의 수용과 신라의 성공적인 정치통합의 인과 관계를 공인과 실천 주체로서의 법흥왕과 실천 결과로서의 그의 치적을 통하여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법흥왕은 마립간시대에서 왕호시대로 전환된 직후부터 시작되는 상고기⁶⁾의 첫 번째 왕으로 시대구분의 한 분기점이 된 왕이고, 부족연맹체 수준의 신라를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체제로 발전시킨 왕이었다. 법흥왕이 국가체제 정비를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지만,⁷⁾ 그러한 정책들이 ‘불교를 공인한 왕’이라는 그의 상징성 그리고 공인된 불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은 편이다. 신라정치사에서 법흥왕은 통치권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사상적 근거를 확립한 통치자였고, 명실상부하게 왕권을 확립한 왕이었으며, 신라라는 나라의 질적 비약을 견인

2) 위의 논문, p.33.

3) 전덕재,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1996, 19쪽.

4) 서영대, 「신라의 佛敎受容과 天神觀念」 『한국사상사학』, 10집, 14쪽.

5) 박휘택, 「불교와 정치통합 -신라불교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사상사. 檀君에서 解放까지』,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백산서당: 2005) 91쪽

6) 신라사에서 上古期를 설정한 사서는 『삼국유사』로 박혁거세에서부터 지증왕까지를 上古期,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를 中古期, 무열왕 이후를 下古期로 구분하였다.

7) 盧重國, 「法興王代의 國家體制의 強化」,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慶尙北道.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87, 33쪽.

한 전환점으로 위치 지워지는 왕이다.⁸⁾ 필자는 신라의 정치가 법흥왕 대를 기점으로 질적 전환을 이룬 바탕에는 전륜성왕이라는 불교의 정치사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상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었지만, 신라에서는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실천되었다. 그것은 이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의지를 가졌던 법흥왕이라는 실천의 매개자가 있었다는 점이며,⁹⁾ 이 독특함의 실체가 바로 법흥왕의 불교공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흥왕이 실시한 일련의 정책들과 이 정책들이 결정된 과정에는 다양한 정치적 요소와 사상적 배경들 간의 경쟁과 타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흥왕은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분명한 “전륜성왕 의식”¹⁰⁾을 소유했던 통치자였고, 또 그것을 실천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전륜성왕사상이 정책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실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축이였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II에서는 500년대 초, 즉 법흥왕의 즉위 전후 신라사회가 직면했던 정치적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자하며, III에서는 이 과제들을 극복해 간 법흥왕의 중요한 치적들을 년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IV에서는 이 치적들이 전륜성왕사상의 어떤 내용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고자 한다.

II. 법흥왕 즉위 전후 신라의 정치적 과제

영일 냉수리에서 발견된(1989년 4월) 신라비(이하 냉수리비)는 6세기 초 신라가 당면했던 정치적인 과제를 잘 부각시켜 주는 자료이다. 이 비에는 건립 당시 신라의 통치 질서, 왕권의 위상 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비록 지증왕 대의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 상황은 법흥왕 대에 까지 연결된 것들이었다. 신라의 국호가 ‘신라’로 확정된 것은 지증왕 4년(503) 10월의 일이었고, 한 달 전인 계미년 9월 25일에 세워진 이 비에는 ‘사라(斯羅)’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지증왕 4년 9월 25일까지 신라의 공식적인 국호는 ‘사라’였고, 한 달 후인 10월에 ‘신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¹¹⁾ 그리고 이 비문에는 ‘沙喙部 至都盧葛文王’이라는 인물명이 있는데, ‘至都盧’는 지증왕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至都盧가 寐錦王이 아닌 갈문왕으로

8) 일연이 설정한 중고기의 기점을 지증왕이 아니라 법흥왕으로 잡은 사실을 말하는 것임.

9) 필자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하여 오호십육시대의 동아시아에서는 후한의 정치적 혼란과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무기력해진 유교정치사상의 대안으로 불교의 전륜성왕사상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고, 그것은 「대루탄경」과 「아육왕전」의 역경과 유포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힌바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삼국 중에서 전륜성왕사상의 전개와 관련된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신라에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10) 이 개념은 김재영,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 2009, p.204에서 사용한 개념인데, 필자가 용어만 차용하여 사용했음.

11) 김기흥, 『천년의 왕국 신라』(서울: 창작과비평사, 2000), 71~72쪽.

표기되어 있어서, 지증왕은 재위 3년째인 503년 9월까지 정식으로 즉위도 못한 상태였음을 알게 해 준다.¹²⁾ 이는 심한 견제를 받는 허약한 왕권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세력들이 존재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또한 비문에는 ‘七王等’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왕이 한 사람이 아니라, 6세기 초까지 신라에는 같은 시기에 왕을 칭하는 복수의 권력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곱의 왕들’이라고 해석되는 이 구절은 503년 9월까지도 6부의 首長들이 모두 ‘왕’을 칭하였다고 보는데, 이는 당시까지 중앙집권적 왕권이 확립하지 못한 신라의 정치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6세기 전반 왕권의 위상변화에 대한 주요 논점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¹³⁾

지증왕은 재위 시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했던 군주였다.¹⁴⁾ 순장의 금지와 우경의 보급도 그의 개혁정책이었다. 순장금지 정책은 불교의 불살생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우경의 실시로 농업 노동력의 필요성이 증가해서 순장을 금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이다.¹⁵⁾ 그러나 우경은 농사일에 사람의 힘 대신 소의 힘을 이용하는 농법이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인간의 노동력을 훨씬 줄여준다. 때문에 노동력의 필요성은 우경 실시 이전이 더 절실했을 것이고, 만약 순장의 폐지가 농업 노동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이었다면, 실제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우경시작 이전 단계에서 순장은 이미 폐지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는 372년과 384년에 불교를 받아드려 사상을 통일하고, 율령 반포 등을 통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고대국가로 성장해 갔지만, 신라는 이보다 120년이 더 지난 시기까지 부족연맹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 비문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법흥왕 즉위 전후 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당시의 신라에 조속히 극복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정치적 과제들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인데, 그 첫째가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왕권을 강화시켜야 하는 문제였다. 고대 국가에서 왕권은 정치적 수장의 병권 장악, 관료체제의 효율적 정비, 전 국토와 신민들에게 적용되는 통일적 기준으로서의 율령 제정을 통하여 강화되는 것이었다. 법흥왕 즉위 초까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신라로서는 부족연맹의 수장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왕권의 확립과 그것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상의 확립이 시급한 당시 정치적 과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가 강력한 왕권의 토대역할을 하면서 전 신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상의 확립문제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이고 신라도 인근의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영토를 확대한 정복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영토를 넓히고 신민의 숫자를 불리는 것이 국가발전의

12) 『삼국사기』4 신라본기에는 지증왕 1~2년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3년부터 시작된다.

13) 윤진석,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새로운 해석과 신라의 부체제 -〈울진 봉평신라비와〉와 〈포항냉수리신라비〉의 재검토와 비교를 중심으로」, 『신라 最古의 금석문, 포항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 한국고대사학회, 2011. 65쪽.

14) 지증왕 대에 실시된 개혁정책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증왕과 법흥왕의 정책들은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상적 바탕 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김기홍, 앞의 책, 67쪽.

중요한 지표였고, 이것은 동시에 국왕의 직속 영토를 확장시켜서 왕권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였다.¹⁶⁾ 정복에 의한 영토의 확장과 신민의 증가는 서로 다른 믿음과 다른 관습 그리고 서로 다른 독자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집단을 강제로 혼합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새롭게 편입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혼합을 통합으로 묶어낼 수 있는 차원 높은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구사상 간에는 우열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현실적인 정치세력들 간의 대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신라 상고기의 왕들인 17대 내물왕, 18대 실성왕, 19대 눌지왕, 20대 자비왕, 21대 소지왕, 22대 지증왕 등의 왕명들은 불교의 전래과정에서 일어난 신·구사상의 대결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저간의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奈勿·訥祇·炤知는 무교적 색채가 짙은 왕명이고, 實聖·慈悲·智證은 불교적인 의미가 반영된 이름임이 뚜렷하다. 실성왕이 즉위 전에 고구려에 인질로 간 392년은 광개토왕이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서를 내린 해였다.¹⁷⁾ 당시 고구려의 분위기는 평양에 한꺼번에 아홉 개의 사찰을 창건했을 정도로 불교의 교세가 왕성하게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다.¹⁸⁾ 광개토왕은 정복군주적인 전륜성왕 의식을 가졌던 군주로서 고구려의 강역을 최대로 넓힌 왕이었다. 따라서 실성왕은 불교라는 정신적 기반 위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강성하게 키워 가는 고구려의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함으로써 불교의 정치적 효용을 체감하였을 것이고, 그의 이러한 경험은 신라 왕실에 불교를 알린 한 통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비왕 다음에는 다시 무교적 색채가 짙은 21대 炤知王이 등장하여 왕 9년에 시조의 탄생지인 奈乙에 신궁을 지었고,¹⁹⁾ 10년에는 무교세력인 日官의 말에 따라 內殿에서 향을 올리고 수행하는 승려(梵修僧)를 사살하였다.²⁰⁾

이 사금갑조는 불교를 탄압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기록을 통하여 소지왕 때에 이미 ‘내전’²¹⁾이라는 향을 피우는 장소가 있었고, 여기서 향을 피우고 수행을 하는 승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인 훨씬 이전부터 불교의 승려가 왕궁 내에 상주하고 있었을 정도로 비공식적이지만 광범위하게 불교가 수용되어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²²⁾ 또한 이 ‘사금갑’기사는 소지왕 때 무불 양 세력 간에 큰 충돌이 있었고, 이 충돌에서 소지마립간은 무교적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과 고구려와 백제에 불교가 전래되었던 시기와 멀지 않은 시점부터 신라왕실도 불교를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²³⁾

16)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의 實際 - 佛教 ‘下賜說’ 批判-」, 『백제연구』29, pp.78-79.

1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奈勿尼師今37년

18)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광개토왕 2년.

19) 三國史記 卷3 炤知麻立干 9년

20) 三國遺事 卷1 射琴匣

21) 내전이 설치된 시기는 눌지왕 후기 혹은 자비왕 때의 일로 보며, 향은 당연히 불상 앞에서 올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조선시대의 내불당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22) 기록상으로 신라에 제일 먼저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눌지왕대에 목호자가 고구려로 부터 일선군에 온 때이고, 그 이후 비처왕 때에는 아도화상이 시자 3명과 모례의 집에 왔다.

23) 고익진, 앞의 논문, 39쪽.

소지왕 다음 왕이 지증왕이고, 이 왕명은 깨달음의 단계와 그 때 얻게 되는 지혜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된 경전상의 용어이다.²⁴⁾ 왕명 상으로 볼 때 경전적인 용례를 가진 가장 불교적인 왕명은 자비왕과 지증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증왕은 재위 동안 신라의 구곡을 혁파하는 중요한 개혁정책들을 실시하였는데, 이 정책들의 이면에 깔려있는 정신적 기초는 후술하게 될 법흥왕의 정신적 기반과 동일한 것이었다. 특히 지증왕은 재위 3년에 무교적 관습의 하나인 殉葬을 금하는 命²⁵⁾을 내렸다. 필자는 이 순장금지령을 살생금지령의 전 단계 조치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증왕의 개혁정책은 아들인 법흥왕에게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불교의 공인을 통한 신라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선진문물의 유입이 차단된 고립적인 대외관계를 극복하는 문제였다. 신라는 법흥왕 대 까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대외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와 처음 교섭을 한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지을 수가 없지만 적어도 377년을 下限 점으로 잡을 수 있음은 명백하다.²⁶⁾ 이후 381년 내물마립간이 파견한 사신인 衛頭가 고구려의 사신을 따라 前秦으로 가서 符堅 왕과 외교적 교섭을 한 적이 있었다.²⁷⁾ 이 때 전진과의 교류는 당시 신라인들의 한문자의 해독 내지 구사능력 때문에 독자적인 교섭은 어려웠을 것이고, 안내와 통역도 자연히 고구려에 의존하였을 것이다.²⁸⁾

신라의 중고기²⁹⁾가 지증왕부터가 아니고 법흥왕부터로 시대를 구분한 삼국유사 찬술자의 의도는 불교의 공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증마립간은 4년에 신라라는 국호를 확정하고 마립간의 호칭을 왕으로 바꾸는 일대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는 왕보다는 매금으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³⁰⁾ 이는 법흥왕까지도 관성상 매금왕으로 호칭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가 대다수의 신라 신민들에게 왕으로보다는 매금으로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증왕은 개혁적으로 제도의 정비를 단행하였고,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우산국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등 법흥왕과 유사한 치적을 남겼다. 그러나 지증왕과 법흥왕 사이에는 전륜성왕 의식의 소유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만약 법흥왕의 행보에 전륜성왕을 지향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왕권과 왕의 권위에 질적 변화는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시대구분의 기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24) 『중아함경』 29. 大拘絺羅經

25) 三國史記 卷4 智證麻立干 3年

26) 『資治通鑑』104 晉紀 烈宗 太元2年條(太元二年春 高句麗 新羅 西北夷 皆使入貢于秦)

27) 『삼국사기』3 新羅本紀 奈勿尼師今 26年條

28) 朱甫墩, 『嶺南學』 창간호, 198쪽.

29) 법흥왕에서 진덕여왕에 이르는 이 시기를 김철준은 불교식 왕명시대라고 했다. 그러나 법흥이나 진흥보다 더 불교적인 왕명은 오히려 지증왕이라고 할 수 있다.

30) 『삼국사기』

Ⅲ. 법흥왕의 치적

법흥왕은 지증왕과 연제부인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고 속명은 원종이다. 법흥왕은 즉위 전에 통치와 관련된 불교의 가르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을 그의 정치적 행보에서 엿볼 수 있는 왕이다. 그의 치적을 재위 년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그는 통치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즉위 전부터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이 사전 지식에 따라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취해 나갈 정책들이 로드 맵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 즉위 후 기록상으로 법흥왕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군권의 장악과 군사부문의 정비였다. 그는 즉위 3년에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병부령을 임명하고³¹⁾, 1년 후인 즉위 4년에 병부를 설치했다.³²⁾ 이 병부령의 임명은 존재하지 않는 관부에 책임자부터 임명한 것이었다. 좀 후대의 일이지는 하지만 대체로 신라에서는 관부가 먼저 설치되고, 그 뒤에 령(부서장)이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다는 점에서 이 일은 특별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라의 군대는 6부 총장들이 통솔하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6부의 병력으로 분산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군대는 미미하고 비효율적이었다. 병부의 설치는 6부의 병력을 왕의 군대, 즉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명령체계를 갖춘 국가군대로 재편하는 일이었다.³³⁾ 따라서 이 일은 왕과 6부 수장들 사이의 권력관계 재편으로 연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발은 예측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의 성격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 사전준비를 위한 책임자가 바로 병부령이었을 것이다.³⁴⁾

2. 군사부문에 대한 일원적 통제권을 확보한 법흥왕은 재위 7년(520)에 율령을 반포하고,³⁵⁾ 공복제정(公服制定)을 통하여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되는 국가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 때 반포된 율령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공복의 내용을 규정하는 단순한 ‘의관제’³⁶⁾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유교적인 仁을 본지로 하는 율령’이었을 것으로 보는 주장들까지 제기 되어 있다.³⁷⁾ 하지만 이 율령의 내용이 본고의 논지전개를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여부와 관계없이 율령이란 그 자체가 고대 동양사회의 성문법을 의

31) 삼국사기 권 제38, 雜志 第7.

32)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법흥왕.

33) 신형식, 「新羅 兵部令考」, 『역사학보』제61집, 70쪽의 각주)19를 참조.

34) 법흥왕 3년에 병부령 1인이 임명되었으나, 몇 월에 누구를 임명했는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고, 병부는 4년 4월에 설치되었으므로 설치 준비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4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35)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7년 조. 율령이 유교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된 불교공인과 법흥왕의 숭불 행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6) 鎌田茂雄, 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 官制」, 『古代朝鮮と日本』, 87~91쪽.

37) 盧重國, 앞의 논문, 37쪽. 율령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田鳳德, 1968, 「新羅의 律令考」, 『韓國法制史研究』, 所收을 참조.

미하는 것이었고, 국가의 통치와 지배조직에 대한 기본법전이었으므로 그것의 반포와 시행은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이 중앙집권화 된 일원적 지배체제를 확립되었음과 일관성이 담보되는 사회운영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⁸⁾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온 신민을 통치하는 국가권력이 문자화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왕의 통치권이 확고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⁹⁾ 따라서 국가체제 정비의 핵심적인 사항인 율령의 반포는 법에 의한 국가 지배의 기초를 마련한 일이며,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증왕대에 시행된 지방의 주군제와 중앙의 관등체계정비 등의 준비단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앙의 관등체계정비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지배기구를 가졌던 중앙의 대소세력들을 일원적인 국가체제 내로 편제시키는 작업이었고, 주군제의 시행을 통한 지방관의 파견은 지방의 대소족장들의 독자성을 억제시키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일이었다고, 이의 법제화가 율령이었다.⁴⁰⁾

3.군사적 통제권을 장악하고, 일원적인 통치 질서를 확립한 법흥왕은 재위 8년째인 521년에 시야를 대외관계로 까지 확장하여 중국의 남조 梁나라에 사신을 파견 한다.⁴¹⁾ 신라가 처음으로 접촉한 중국은 부견의 전진이었고, 그 시기는 내물왕 22년(377)이었으며, 내물왕 26년에는 두 번째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두 번의 접촉 결과가 신라사회에 어떤 영향을 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긴박하게 해결을 요하는 내부적 요청이나 외교적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접촉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후 신라의 대 중국외교관계는 법흥왕이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할 때까지 무려 140년간 단절된 상태였다. 이 교섭도 신라 단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백제 사신을 따라서 간 것은 고구려의 사신을 따라간 전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교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적 자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법흥왕이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이 사실은 ‘신라식 세계화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⁴²⁾

4.법흥왕 15년(528)에는 불교를 공인하였다.⁴³⁾ 신라의 불교공인 연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전거가 있다. 첫째는 법흥왕 15년(528)에 불교가 공인되었다고 기록된 『삼국사기』이고, 둘째는 법흥왕 16년(529)으로 기록한 『해동고승전』이며, 셋째는 법흥왕 14년으로 기록한 『삼국유사』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기백은 법흥왕 14년은 이차돈이 순교한 해이고, 실제로 불교가 공인되어 흥륜사의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은 법흥왕 22년(535)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⁴⁴⁾ 본 연구는 년대를 고증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

38) 노중국, 위의 논문, 35쪽.

39)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의 實際 - 佛教‘下賜說’批判-」, 『백제연구』29, p.77.

40) 노중국, 위의 논문, 44~45쪽.

41) 삼국사기

42) 박휘택, 위의 논문, 94~ 95쪽

43) 삼국사기

사의 기록을 따른다.

토착사회에 전통사상과 다른 신사상이나 고등종교의 유입은 그 자체가 사회변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변동의 견인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사회변동은 결국 세력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 불교공인문제와 관련된 이차돈의 순교 사건은 바로 불교와 재래 종교 혹은 왕실과 귀족집단 사이에 일어난 이해관계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 불교포교문제와 관련된 희생자의 발생은 이차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해동고승전』에 전해지는 ‘고구려의 승려 正方과 滅垢比가 신라에 불교를 전하려다가 죽임을 당했으며, 아도 화상 또한 몇 차례 죽을 고비 넘겼다’⁴⁵⁾는 기사는 불교가 신라사회에 뿌리는 내리는 일이 만만치 않았음을 전해 주는 자료이다.

서영대는 신라의 귀족들이 불교의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 불교교리가 신라의 전통적인 사유체계 내지 종교적 관념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는 이 점은 왕실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였을 터이지만, 왕실이 불교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첫째 불교가 기존의 종교보다 치병 등의 주술적인 면에서 더 우월했다는 점, 둘째 새로운 문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승려들의 지식(아무도 몰랐던 향의 명칭과 용도 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돋보였을 가능성, 그리고 종교를 통한 정치권력의 정당화라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⁴⁶⁾ 첫 번째 이유는 대중의 통상적인 종교적 욕구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수복멸죄의 장소’ 제공을 위한 흥륜사 창건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이유도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대중의 구복적 요구에 부응하는 명분이었고, 실제로 법흥왕이 불교의 공인을 그렇게 원했던 것은 정치적 이유, 즉 불교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통치자 이론이 가진 매력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차돈의 순교는 불교의 수용이 아니라 이미 전래되어 대중들에게 신앙되고 있던 불교를 공식화하려는 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실성마립간이나 눌지마립간이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었던 시기는 광개토왕의 보호 하에서 불교가 왕성하게 포교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구려에서 불교를 접했을 것이고, 불교라는 선진 신사상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신라 왕실에 보고 혹은 소개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었을 것이다. 법흥왕의 불교교리에 대한 이해정도는 알 수 없지만, 즉위 전에 이미 불교를 알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가 개혁군주의 장남으로 자신의 치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통치자, 특히 전륜성왕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접했음은 재위 중에 나타나는 그의 행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5. 불교공인 다음해인 16년에 법흥왕은 살생금지 명령을 내린다.⁴⁷⁾ 살생은 출가자와 재가

44) 이기백, 『삼국시대 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

45) 해동고승전

46) 서영대, 『신라의 불교수용과 천신관념』, 『한국사상사학보』제10집, 8~9쪽.

자를 불문하고 불교도가 금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금계이요 윤리규정이다. 율장에 의하면, 승려의 살생은 세속법의 사형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는 ‘4바라이’⁴⁸⁾를 범하는 일로서 승가에서 추방되는 중죄이며, 또한 재가자들이 수지하는 5계의 첫 계목이기도 한 것이다. 불교 공인 1년 후에 나라 전체에 국왕이 살생금지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은 법흥왕의 내면에 매우 높은 수준의 불교적 가치관과 행위규범이 체내화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9. 법흥왕 18년(531) 3월 제방의 수리를 명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저수지의 독을 쌓거나 수리한 일과 관련된 기록이 지금의 영천지방에 남아있는 청제비(靑堤碑)이다. 이 비문의 첫머리에는 병진(丙辰)이라는 干支가 보이는데, 이 간지로 비 건립의 절대연대를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법흥왕 2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⁴⁹⁾ 저수지의 건설이나 무너진 독의 수리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이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농업생산력의 증대 그 자체였다. 농경시대에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일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는 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 최악의 근절과 도덕적인 삶의 출발점으로 보는 불교적 이상사회건설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10. 법흥왕 18년에 상대등을 설치하였다.⁵⁰⁾ 상대등의 설치에 왕이 귀족회의의 일원이면서 회의를 주재했던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도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을 보여주는 일로 해석된다. 따라서 왕은 귀족회의 의장의 일을 상대등에게 위임하고 한 단계 고양된 정치적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⁵¹⁾ 또한 이는 법흥왕대에 와서야 비로소 신라가 부족연맹체 수준에서 중앙집권적 왕권이 확립된 고대국가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11. 법흥왕 19년에는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⁵²⁾ 이 병합은 전쟁을 통한 영토확장이 아니라, 금관가야의 자진 투항형식으로 이루어진 병합으로 신라로서는 평화적으로 영토를 확장한 일이었다. 금관가야의 평화적 병합은 왕의 주도면밀한 사전 정치작업에 의하여 성공한 일이었다. 법흥왕은 이미 재위 9년이었던 522년에 금관가야의 청으로 양국 왕실간의 결혼 화친을 통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이후, 신라의 군사적,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취하였다. 그 결과 법흥왕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 일은 전륜성왕을 지향하는 법흥왕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7) 『삼국사기』법흥왕본기 16년조

48) 『율장』 「바라제목차」

49)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2권(신라1.가야편)(서울: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5), 24쪽.

50) 삼국사기 법흥왕 18년조

51) 이기백, 1974,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研究』

52) 삼국사기 법흥왕 19년조

12. 법흥왕 22년(535)에는 그 동안 중단되어 있던 흥륜사 창건공사가 속개되었다.⁵³⁾ 흥륜사는 법흥왕 14년(524) 아도의 주청과 ‘蒼生을 위해 修福滅罪의 자리를 만들고 싶다’⁵⁴⁾는 왕 자신의 염원에 의하여 창건이 시도되었지만, 귀족세력의 저항으로 異次頓의 순교 사건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신라 최초의 사찰이었다. 왕의 염원은 대중의 종교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명분을 제시함으로써 흥륜사 창건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것이었다.

또한 이 해는 “聖法興大王”이라는 천전리 서석의 을묘명이 새겨진 해이다. 이 서석명⁵⁵⁾ 속에는 법흥왕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정치사상을 해명할 수 있는 상당한 정보가 들어 있다. 특히 聖·大王·道人 등의 용례는 법흥왕의 정치사상을 보여주는 단서들이다. ‘聖王’⁵⁶⁾이라는 용어는 ‘輪王’⁵⁷⁾과 함께 경에서 사용된 전륜성왕의 줄인 말이다. 그리고 ‘대왕’이라는 호칭도 전륜성왕이 등장하는 경에서 소국의 왕들이나 신하들이 왕의 면전에서 그를 호칭할 때 사용한 용어였다.

천전리 서석에는 법흥왕과 관련 있는 세 종류의 기록이 있다. 첫째는 법흥왕 21년으로 추정되는 갑인명이다. 갑인년(534)에 새겨진 이 기록에는 ‘大王寺’ ‘大王興輪寺’ 라는 사찰 이름이 있다. 겨우 마립간의 호칭을 넘어선 정치적 수장이 여기서는 ‘대왕’으로 호칭되고 있다. 두 번째 것이 위에서 살펴 본 “聖法興大王”이라고 새겨져 있는 을묘명이고, 세 번째는 追銘으로 법흥왕 26년인 己未년에 새겨진 것인데, 법흥왕의 왕비를 “另卽知太王妃”라고 새겨 놓았다. ‘영즉지’는 ‘모즉지’와 같은 법흥왕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법흥왕의 호칭은 매금왕, 대왕, 성왕, 태왕으로 변천되어 갔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신라의 전통적인 왕호인 매금왕을 제외한 다른 호칭들은 모두 불교의 전적과 전통 속에서 전륜성왕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다.

524년에 세워진 울진 봉평비에서는 卽智寐錦王으로도 불리진 법흥왕의 호칭이 불과 11년 후에 새겨진 이 서석에는 “聖法興大王”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곳을 방문한 일행 속에는 安及이라는 비구승과 首乃至라는 사미승이 포함되어 있고, 새겨진 문장 내에서 그들의 이름 위치로 보아 상당히 비중 있는 동행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각석의 내용과 인명의 등장 순서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부터 불교도에게만 국한된 인식이었는지 혹은 일반화된 호칭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하여튼 그를 ‘법을 일으킨 성스러운 전륜성왕’으로 보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乙卯銘의 書石은 불교가 공인되고 늦어도 7년이 되는 시점

53) 三國遺事 권3 阿道基羅 割註

54) 三國遺事 卷3 原宗興法

55) 乙卯年八月四日聖法興大王節道人比丘僧安及以沙彌僧首乃至居智伐村衆士人等見記.

56) 聖王이라는 호칭은 백제와 고구려에서도 사용되었다. 비슷한 시기 백제의 왕은 왕호 자체가 성왕이었고, 고구려의 예도 나온다. 「광개토왕비」에는 고구려의 시조왕을 鄒牟王이라 했고, 「모두루묘지명」에서는 鄒牟聖王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경철(2006, 8~9쪽)은 동명성왕, 추모성왕은 모두 4세기 고구려의 불교수용 이후에 쓰인 왕호이기 때문에 불교의 轉輪聖王의 聖王을 의미하는 왕호로 쓰여졌다고 보았다.

57) 輪王七寶經

부터 법흥왕은 麻立干을 넘어 대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확립했음을 증언해 주는 것이다.

한역경전에 사용된 신라인들이 알고 있었을 왕의 호칭으로는 이 밖에도 좀 희귀한 예이기는 하나 “천왕(天王)”⁵⁸⁾ 혹은 “천자”라는 용례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호칭들은 신라에서는 물론이고 불교문화권의 보편적인 왕명으로는 정착되지 못하고 전륜성왕의 다른 표현인 대왕이나 성왕이 보편화되었던 것 같다.

13. 법흥왕 23년에는 ‘建元’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호의 사용은 중고기기의 다른 시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법흥왕 대에서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建元·開國·太昌·鴻濟·建福·仁平·太和라는 고유 연호가 사용되었다.⁵⁹⁾ 고유 연호의 사용은 대외적으로는 자주외교와 자주적인 국가 경영의 표현이고,⁶⁰⁾ 대내적으로는 국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신라가 전륜성왕이라는 황제적 위상을 가진 최고 수준의 통치자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는 나라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법흥왕의 출가에 관한 문제이다. 기록상에 출가를 한 신라의 왕으로는 법흥왕과 진흥왕이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에는 법흥왕의 출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진흥왕이 출가하여 법호를 法雲이라 하였고 왕비 역시 출가하여 永興寺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⁶¹⁾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는 법흥왕이 출가하여 법명을 法雲, 字를 法空이라 하었다고 전한다.⁶²⁾ 또한 「지증대사비」에 나오는 “遍頭 寐錦之尊”은 법흥왕으로 보지만⁶³⁾, ‘剔髮한 上仙’은 이차돈 순교 기사와 연결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진흥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⁶⁴⁾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⁶⁵⁾

법흥왕은 재위 27년 사망할 무렵에는 출가한 비구의 신분으로 흥륜사에서 주석했던 것 같다. 그가 주석했던 연유로 『해동고승전』에는 흥륜사를 “大王興輪寺”⁶⁶⁾ 라고 기록하고 있는

58) 『중아함경』 「대선견왕경」

59) 삼국사기

60) 박휘택, 2005, 94~95쪽

6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眞興王 37年條

62) 『三國遺事』 권3, 興法 3, 原宗興法 厭觸滅身條; 『海東高僧傳』 권1, 流通1, 法空傳(阿道碑 引用)

63)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신라편)(서울:가산문고 1994), 295쪽.

64) 위의 책, 299쪽

65) 이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① 법흥왕의 捨身으로 평가하는 관점: 辛鐘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史, 1992, 162~128쪽, 188~190쪽; 「新羅佛敎公認의 實相」, 『新羅佛敎의 再 照明』14, 新羅文化宣揚會, 1993, 150~162쪽.

② 법흥왕의 완전한 출가로 보는 견해: 李逢春, 「興輪寺와 異次頓의 순교」, 『新羅文化』20, 2002, 64~66쪽; 李在庚, 「文獻에 보이는 興輪寺」, 『新羅文化』20, 2002, 155~156; 淨光 編, 『智證大師碑銘小考』, 경서원, 1980, 613쪽.

③ 진흥왕만 출가했다고 보는 견해: 문경현, 「新羅佛敎 肇行攷」, 『新羅佛敎의 再 照明』14, 新羅文化宣揚會, 1993, 133~135쪽; 李佑成 校譯, 『新羅四山碑銘』, 亞細亞文化史, 1995, 206쪽, 213쪽; 崔英成, 『譯註 崔致遠全集 1 -四山碑銘-』, 亞細亞文化史, 1997, 301쪽(김병근, 경주사학 22, 15~16쪽).

④ 법흥·진흥왕 모두 출가한 것으로 보는 견해: 이기동, 「新羅社會와 佛敎」, 『佛敎와 諸科學』, 東國大學 校開校八十週年紀念論叢, 1987; 『新羅社會史研究』, 一朝閣, 1997, 90~95쪽.

66) 해동고승전 171쪽

데, 이는 이미 그렇게 불려지고 있던 사명을 진흥왕이 후에 사액으로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한다. 법흥왕의 출가생활은 소유물이라고는 “세벌의 옷과 기와로 만든 바루(念三衣瓦鉢)”밖에 없었을 정도로 매우 청빈하고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는 비구의 생활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三衣一鉢’은 출가자의 율법인 『율장』의 규정이다. 때문에 왕의 이러한 행적을 “양 나라 무제와 비교해서는 안 될(以梁武比之非也)” 정도로 수승한 것이라는 찬술자의 평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⁶⁷⁾ 보살천자로 잘 알려진 양 무제는 독실한 승불군주였고, 4번이나 사신을 하였다. 그러나 군주의 사신은 출가와 다른 것이다. 사신은 왕위를 유지하면서 절에서 거주하는 것이지만, 출가는 다른 업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왕위를 유지한 출가는 불교의 내재적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IV. 전륜성왕의 개념으로 조망해 본 법흥왕의 치적

전륜성왕에는 ‘칠보를 성취하고 4신덕을 구축한 왕’, ‘사주의 왕’, ‘사변의 정복자’ 혹은 ‘여법한 법왕’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⁶⁸⁾ 그리고 어떤 왕이 전륜성왕 인지 아닌지는 1)붓다와 같은 32가지의 신체적 특징(32상)⁶⁹⁾ 2)일곱 가지 보물의 具足 혹은 成就,⁷⁰⁾ 3)네 가지의 신령한 덕(四神德),⁷¹⁾ 4)네 종류의 통솔할 군대(四兵),⁷²⁾ 5) 다스릴 4천하의 영토,⁷³⁾ 5)1000명의 용감한 아들 등의 징표에 의하여 가려진다.

32상은 출가수행하면 부처가 될 상이고,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임을 예언해 주는 신체적 특징으로 32대인상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붓다와 전륜성왕의 세 가지의 공통점 중의 하나이다.⁷⁴⁾ 칠보와 사신덕은 전륜성왕이 갖추어야 할 공적 혹은 사적인 물심양면의 미덕과 정책실현 능력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四兵을 거느림은 강력한 군사력과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춘 병권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대의 武力을 無力化시켜 오히려 ‘갈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고 법(不以刀杖以法教令)’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정법

67)해동고승전 174쪽

68)『雜阿含經』권제30: 『中阿含經』제11권 「七寶經」; 『長阿含經』에서 轉輪聖王에 관한 언급은 대체로 ‘총명지혜’ ‘삼십이상’ ‘칠보성취’ ‘사신덕’ ‘사천하의 왕’ ‘천명의 아들’ 등 앞의 다른 경과 비슷하다. 그러나 『잡아함경』 및 『중아함경』과 『장아함경』의 서술 사이에는 두 가지의 차이가 나타난다.

69) 中阿含經 제13, 三十二相經. 이 상을 가진 사람은 출가하면 부처가 되고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 된다고 하는 설화가 고타마 붓다의 탄생 설화와 결합되어 전해지고 있다.

70) 칠보의 상징에 대한 해석은 윤세원, 「전륜성왕의 정치사상적 의미에 관한 연구 -통치자질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제14호(불교학연구회: 2006 .287~314쪽)을 참조.

71) 何謂四神德 一者長壽不夭 無能及者 二者身強無患 無能及者 三者顏貌端正 無能及者 四者寶藏盈溢 無能及者.

72) 象兵.馬兵.車兵.步兵을 말하는데,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형태의 군대를 총칭하는 의미였던 것 같다.

73) 사천하 혹은 사주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자리 잡고 있는 대륙들로 한 우주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74) 장아함경, 유행경. 첫째는 32상의 구축, 둘째는 탐을 세워 존경할 만 한 대상, 셋째는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장례를 치루는 것 등이다.

을 통한 정복으로 영토를 사천하에 까지 확장하고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항상 압도적인 군사력을 대동한다는 사실은 힘의 뒷받침이 없는 이상은 현실로 전환되기 어려운 현실 정치에 대한 성찰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천하를 다리는 조건은 우주적 정복군주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영토를 지배하는 군주의 출현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륜성왕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전륜성왕에 대한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 단초이다.

전륜성왕은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질을 갖춘 통치자로서의 전형”을 의미하는 개념이지만,⁷⁵⁾ 五戒 실천의 의무 즉 도덕율에 복종하고 견제 받을 때 정당성을 갖는 권력이다.⁷⁶⁾ 이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금륜보가 정위치를 벗어난다. 금륜이 사라짐은 통치의 본질에 대한 내면적 자각이 없는 통치자의 등장이나 현재의 통치자가 전륜성왕의 임무수행에 실패하여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리주어야 할 때 일어나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의무의 실패 정도가 심해지면 왕권은 도적의 힘과 차이가 없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⁷⁷⁾

따라서 전륜성왕은 다스리는 영토의 크기, 뛰어난 정복 업적에 의하여 평가되는 제왕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들을 내우외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궁핍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부국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군주이면서 동시에 권력행사의 내면적 동기에서부터 도덕적 견제⁷⁸⁾를 스스로 수용하는 군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륜성왕 개념으로 법흥왕의 치적을 조망해 보면, 첫 번째 조망대상이 병부령의 임명과 병부의 설립으로 나타난 병권의 장악에 관한 것이다. 왜 법흥왕은 군의 재편을 첫 과제로 들고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전륜성왕으로 가는 길에 병권의 장악이 제일 우선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군사 통솔에 관한 일원적인 지휘체계의 확립은 전륜성왕이 정법치국을 하면서도 항상 4군을 대동한다는 가르침에서 시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은 법흥왕대에 法幢主 - 法幢監 - 法幢頭上 - 法幢火尺 - 法幢辟主 등 ‘法’자가 붙은 군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⁷⁹⁾ 법은 불법 혹은 정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노중국은 ‘법흥왕은 불교공인 이후 새로이 군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불법수호=호국이라는 논리에 따라 불법으로 국토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중앙에 신설한 軍團을 法幢으로, 지방에 설치한 군단을 外法幢으로 명명하고 또 軍官명칭도 ‘法’자를 관형어로 사용 法幢軍官으로 개칭하여 기존의 부대에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⁸⁰⁾

두 번째 대상이 왕권의 강화와 통치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들이다. 병부와 상대등의 설치

75) 윤세원, 「전륜성왕의 개념형성과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동양사회사상』제17집.(동양사회사상학회: 2008) 175~200쪽을 참조)

76) 長阿含經 18, 世紀經 轉輪聖王品 第3.

77) 위의 경.

78) 증일아함경 2.

79) 직관지 武官條, 노중국,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80) 노중국, 법흥왕대의 국가체제의 강화, 57쪽.

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율령의 반포와 공복의 제정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문화 된 일원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 질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법치’와 ‘보편성’의 확립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금륜보가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 중의 하나이다.

세 번째 대상은 ‘금륜보의 성취 혹은 구축’의 상징성 획득이다. 불교의 공인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일이고, 그의 모든 업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근본 틀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을 ‘법’이라는 말로 표현할 경우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을 ‘전법륜’, 즉 법륜을 굴린다고 표현한다.⁸¹⁾ 붓다의 최초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동일한 논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륜성왕이 윤보를 굴린다는 것은 정법에 의하여 도덕적으로 통치하고 그 결과로 도덕적인 사회가 구현되도록 실천함을 의미이고, ‘불교의 공인’은 ‘정법의 성취 혹은 구축’의 주체가 법흥왕 자신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일이 된다. 때문에 윤보의 굴림은 정법치국의 동의어이고, 금륜보는 공동생활과 통치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륜성왕의 통치를 윤보를 굴린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법치국의 내용 중에 하나가 청제비에서 볼 수 있는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력이고, 이는 불교적 이상사회인 도덕적인 사회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금륜보 성취의 결과는 금관가야의 병합이라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은 영토의 확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전륜성왕을 지향하는 법흥왕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대상은 진리의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되는 삶의 방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불교화 한 일들이다. ‘금살령’은 이러한 법흥왕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정책이다. 불살생은 불교도의 윤리강령 제1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사회건설의 출발점이다. 또한 불살생은 불교의 개인윤리이면서 동시에 정치·사회 윤리의 초석이다. 불교공인 후 바로 금살령이 내려진 것은 불교 공인에 대한 그의 열정이 단순히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 역의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살생금지령은 실존 전륜성왕 아쇼카 왕이 시행한 정책이었고,⁸²⁾ 법흥왕보다는 늦은 시기였지만, 백제왕으로 불교진흥에 힘썼던 法王⁸³⁾도 같은 정책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이 정책은 전륜성왕을 지향한 군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대상은 전륜성왕식 영토확장이다. 비록 대규모의 영토 확장은 아니었지만, 법흥왕의 금관가야 병합과정과 방법은 경전에 서술되어 있는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는’ 전륜

81) 전법륜경

82) 아육왕전

83) 삼국유사, 법왕금살조. 法王이라는 칭호는 붓다와 전륜성왕의 다른 칭호 중 하나로 경전적 용례가 있다.

성왕식의 영토확장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업적을 낸 3년 후에는 대왕·성왕·태왕 등 전륜성왕에게 붙이는 호칭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자신감의 대외적 선포라고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연호의 사용은 중고기의 왕들에게 지속적인 전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법흥왕의 출가 역시 경전에 묘사된 전륜성왕의 마지막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전륜성왕은 왕궁의 하늘에 떠있던 정법치국의 상징인 金輪이 사라지자 전륜성왕으로서 자신의 치세가 끝났음을 알고, 후계자에게 금륜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지 유산으로 물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왕위에서 물러나 출가 한다고 되어 있다.⁸⁴⁾ 왕위를 물려주고 완전한 출가를 한 제왕은 불교사에서 존재를 찾기 어려운 일로 전륜성왕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경에만 있는 일이다.⁸⁵⁾ 따라서 해동고승전의 법흥왕 출가에 관한 기록들은 다른 한편으로 법흥왕 대에 받아들여진 전륜성왕사상은 왕즉불이라는 북조 불교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조불교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고, 나아가서는 경전의 가르침 속에 있는 전륜성왕이 법흥왕의 원형적 모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⁶⁾

V. 맺음말

불교도들은 초기 불교 이래로 깨달음의 세속적 가치인 자유·평등·복지가 실현된 사회의 건설을 염원했고, 후대의 불교도들은 그러한 이상사회를 불국토 혹은 정토라고 불렀다. 불교도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세속의 이상사회는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의 최고 가치인 깨달음 추구하고 깨달음의 결과가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구조와 그러한 윤리관이 확립된 사회이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정신과 육체에 대한 내외의 부당한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 인간 가치에 대한 인위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경제적으로는 도덕적 수치심을 상실할 정도의 궁핍으로부터 해방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정신적 가치의 생산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그리고 5계가 보편적인 행동규범으로 실천되는 도덕적인 국가사회를 말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유능한 통치자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현실을 정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이고,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통치자를 전륜성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좋은 통치자의 출현에 대한 민초들의 기대는 왕권에 관한 사유를 불교에서 배제시킬 수 없게 만든 원인이었고, 6세기 초 신라 땅에서 이 기델르 저버리지 않은 법흥왕

84) 『長阿含經』, 「轉輪聖王修行經」.

85) 위의 경.

86) 이 점에 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하여 규명해 볼 것을 약속하면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은 분명한 ‘전륜성왕 의식’을 소유하고 실천했던 통치자였다. II에서 검토해 본 6세기 초 신라가 직면했던 정치적 과제들과 IV에서 살펴 본 법흥왕의 치적을 연결시켜 보면, 그가 실시한 일련의 정책들 속에는 어떤 목적지향의 내적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을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으로 조망해 보면, 그의 개혁정책은 전륜성왕의 조건을 충족시켜 가는 과정, 즉 스스로 전륜성왕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그가 지향했던 목표의 실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전륜성왕화 과정이라는 법흥왕이 실시했던 정책들은 당대의 신라가 안고 있었던 왕권의 강화문제, 새로운 정신적 구심점의 모색, 고립적인 대외관계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과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거나 할 수 있는 역사의 진행방향과 동일 궤도 위에 있었던 것이었다. 때문에 신라에서의 불교정치사상은 고구려나 백제에서보다 훨씬 더 적실성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순기능의 바탕에는 바로 불교의 정치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했던 용감하고 현명한 군주 법흥왕의 선택과 지혜로운 실천이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신라가 불교수용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정치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라에서 수용한 전륜성왕 사상은 고구려와 백제 뿐 만 아니라 오호십육시대 북중국의 호족 출신 군주들이 수용했던 불교와는 그 내용과 수용주체의 실천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雜阿含經』 권제30,
- 『中阿含經』 제11권 「七寶經」
- 『중아함경』 「대선견왕경」
- 『長阿含經』 18, 「世紀經 轉輪聖王品」
- 『장아함경』, 유행경.
- 『증일아함경』
- 「전법륜경」
- 「輪王七寶經」
- 『율장』 「바라제목차」
- 『구사론』
- 『아육왕전』
-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資治通鑑』

高寬敏,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雄山閣, 1996,

고익진, 「韓國古代의 佛敎思想」, 佛敎私學會 編,, 『初期韓國佛敎敎團史研究』, (서울: 민족사,1992)

김기종, 「신라시대 불교 금석문에 나타난 변체한문의 성격과 그 의미」, 『불교학연구』 제32호, 불교학연구회, 2012.

김기흥, 『천년의 왕국 신라』, 창작과 비평사, 2000.

金基興,1999, 「新羅의 聖骨」 『歷史學報』 164.

金炳坤, 「新羅 王號 ‘寐錦’의 新羅系 使用例 分析」 『慶州史學』 제22집.

김석근, 「삼국 및 남북시대의 정치사상: 토론을 위한 하나의 시론(試論)」, 『한국정치사상사』, 이재석외, 집문당, 2002

金煥泰, 「新羅 眞興大王的 信佛과 그 思想研究」 『佛敎學報』 5, 1967; 『新羅佛敎研究』, 民族文化史, 1989,

김재영,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 2009,

金哲堧. 1952.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下)." 『歷史學報』 2. 역사학회.

盧重國, 「法興王代의 國家體制의 強化」,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慶尙北道·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1987

김창겸(2004, 213쪽)

문경현, 「新羅佛敎 肇行攷」 『新羅佛敎의 再 照明』 14, 新羅文化宣揚會, 1993, 133~135쪽,

박휘택, 「불교와 정치통합 -신라불교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사상사, 檀君에서 解放까지』,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백산서당, 2005.

서영대, 「신라의 佛敎受用과 天神觀念」 『한국사상사학』 제10집.

辛鐘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史, 1992, 162~128쪽, 188~190쪽

「新羅 佛敎 公認의 實相」, 『新羅佛敎의 再 照明』 14, 新羅文化宣揚會, 1993, 150~162쪽,

신형식, 「新羅 兵部令考」 『역사학보』 제61집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가야편)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1995,

윤세원, 「전륜성왕의 정치사상적 의미에 관한 연구 -통치자질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14호(불교학연구회: 2006

윤세원, 「전륜성왕의 개념형성과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제17집,(동양사회

사상학회: 2008)

- 윤진석,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새로운 해석과 신라의 부체제 -<울진 봉평신라비와>와 <포항냉수리신라비>의 재검토와 비교를 중심으로」, 『신라 最古의 금석문, 포항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 한국고대사학회, 2011
- 이기동, 「新羅社會와 佛敎」 『佛敎와 諸科學』, 동국대학교개교팔십주년기념논총,1987; 『新羅社會史研究』, 一朝閣, 1997, 90~95쪽.
- 이기백, 1974,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研究』
- 李基白, 「三國時代 佛敎 受容의 實際 - 佛敎‘下賜說’批判-」, 『백제연구』 29,
- 이기백 「삼국시대 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 李文基, 「6세기 新羅 ‘大王’의 成立과 그 國際的 契機」,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 李逢春, 「興輪寺와 異次頓의 순교」, 『新羅文化』 20, 2002, 64~66쪽);
- 李佑成 校譯, 『新羅四山碑銘』, 亞細亞文化史, 1995, 206쪽, 213쪽;
- 李在庚, 「文獻에 보이는 興輪寺」 『新羅文化』 20, 2002, 155~156,
- 이자랑, 「제정일치적 天降觀念의 신라적 변용 -인도 아쇼카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32호,(서울: 불교학연구회)
- 이정숙,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연구』, 서울: 도서출판 해안, 2012.
- 전덕재,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1996,
- 朱甫墩, 『嶺南學』 창간호. 201~202쪽
- 朱甫墩, 『嶺南學』 창간호.
- 淨光 編, 『智證大師碑銘小考』, 경서원, 1980,
- 崔英成, 『譯註 崔致遠全集 1 -四山碑銘-』, 亞細亞文化史, 1997, 301쪽)
- 최재석, 「古代三國의 王號와 社會」, 『한국고대사회사연구』, 일지사,1987,
- 韓國古代社會研究所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신라1·가야편)(서울: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1995),
- 鎌田茂雄, 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 官制」, 『古代朝鮮と日本』,

춘추(春秋)의 이면(裏面): 『春秋左氏傳』에 내재한 도덕과 전쟁의 정합성

윤 대 식
한국외대

I. 서론

춘추(春秋)시대(770-481 B.C.)는 외형상으로 여전히 주 왕실을 정점으로 하는 종법질서를 유지했지만, 내용상으로 전면적인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즉 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봉 질서(feudal system)에서 다국 질서(multi-state system)로, 장원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家)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부터 대규모 사회변동을 가져온 시기이며,⁸⁷⁾ 지성적·사상적인 측면에서 봉건적 윤리관을 재해석한 공자로 대표되는 지식인 집단의 출현을 통해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수정하는 철학적 ‘돌파’(breakthrough)의 시기이기도 하다.⁸⁸⁾

당시 주 왕조의 쇠락은 정치적 정통성의 공백을 초래했다.⁸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왕조에 대한 형식적인 복종과 가족적인 유대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⁹⁰⁾ 그것은 국가 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주 왕실이 더 이상 간여하지 못하는 열국 간 관계에서 전쟁의 잔혹성을 완화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명목상으로 주 왕실을 정점으로 하는 질서이며, 여전히 주의 예제(禮制)와 규범적 구속력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춘추’로 명명된다.

과연 춘추시대는 예제와 도덕이 여전히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공자가 《춘추》를 짓자 인륜을 어긴 신하와 아들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⁹¹⁾라는 『孟子』의 평가처럼 규범적 질서의 모범이었을까?⁹²⁾ 공자의 『春秋』 저술은 정말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일까? 만약 역사

87) Cho-yun Hsü,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in Michael Loewe and Edward L. Shaughnessy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545.

88) 余英時, 『史學與傳統』(臺北: 時報文化出版, 1982), pp. 37-48.

89) Yuri Pines, “The One That Pervades the All in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 The Origins of The Great Unity Paradigm,” *T'oung Pao* Vol. 86(2000), pp. 280-282.

90) 김충렬, 『중국철학사 1』(서울: 예문서원, 1996), pp. 194-201.

91) 『孟子』「滕文公下」, 9, “孔子成春秋, 而亂臣賊子懼.”

92) 물론 맹자의 평가는 『春秋』를 통해 당시의 현실혼란을 정화하고 질서를 회복시키려 했던 공자의 노력을 자신도 역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합리화하기 위해 채택한 방편일 것이다. 이로부터 공자 역사관의 손익(損益)과 포핍(褒貶)관념은 맹자의 일치일란(一治一亂)이라는 순환적 역사관으로 계승되어

서로서 『春秋』의 저술이 특정 의도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상기한 전제를 수용한다면, 『春秋』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노나라 군자 좌구명이 제자들마다 이단으로 흘러 그 뜻을 잡아버려 진실을 잃을까 걱정하여 공자의 역사기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논구하여 좌씨춘추를 완성했다”⁹³⁾는 『史記』의 기사대로 보자면, 노성공(魯成公) 14년 “군자가 말했다. 춘추의 경에서 말하는 것은 숨긴 듯하고도 분명하고 뜻을 밝힌 듯하고도 흐린 듯하고 완곡하게 표현하고도 문장의 조리가 서고 자세하면서도 왜곡되지 않으며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했다. 성인이 아니고 누가 능히 그것을 닦을 수 있겠는가?”⁹⁴⁾라는 전문(傳文)에서 성인은 공자를 가리킨다.⁹⁵⁾ 따라서 『春秋』의 의도를 정치적 사실에 대한 선악의 도덕적 해석임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春秋左氏傳』(이하 『左傳』으로 약술)일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左傳』이 경전으로의 위상을 획득한 시점이다. 국가교의로 유학의 독존이 이루어진 한무제(漢武帝) 시기에 『春秋』 해석의 근거는 『春秋公羊傳』과 『春秋穀梁傳』이었다.⁹⁶⁾ 반면 『左傳』의 채택은 유흠(劉歆)에 의해 기존 권위인 금문경학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 전개되었으며 향후 금고문 논쟁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 제국에 이르러 『左傳』의 재조명과 위상정립이라는 현상은 『左傳』에 내포된 역사해석이 정치권위와 그 질서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기도

성인의 도를 계승한 왕자(王者)에 의해서 왕도가 구현되고 천하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春秋』의 대일통(大一統)관으로 합일되었다. ; 진영첩(陳榮捷)은 맹자가 요순으로부터 그 전통이 유래한다고 시사함으로써 도통관에 단서를 제공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송대에 이르러 주희가 이러한 관념을 요순으로부터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이정(二程),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도학의 정통으로 확립하고 도통론을 정점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Wing-tsit Chan, *Chu Hsi: New Studi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p. 320.

93) 『史記』 卷14, 「十二諸侯年表」, “魯君子左丘明懼弟子人人異端, 各安其意, 失其真, 故因孔子史記具論其語, 成左氏春秋.”

94) 『左傳』「成公14年」, “君子曰, 春秋之稱, 微而顯, 志而晦, 婉而成章, 盡而不汙, 懲惡而勸善, 非聖人, 誰能脩之?”

95) 양백준은 춘추삼전(春秋三傳)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첫째, 공양(公羊)과 곡량(穀梁)의 경우 노양공 21년 공자의 출생을 기록하는 반면 좌전(左傳)은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 둘째 공양과 곡량은 노애공 14년 ‘서쪽에 사냥 나가 기린을 잡았다’(西狩獲麟)로 끝맺음하는데 반해, 좌전은 노애공 16년 공자의 사망을 넘어서서 노애공이 월국에 이르렀던 일과 조양자가 한씨와 위씨와 더불어 지백을 멸망시킨 춘추 이후의 사적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좌전에서 공자가 춘추를 편수했음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양백준은 좌전이 공자가 기록한 바를 진실로 보여준다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전국시대의 이래의 인식을 다시 상기하고 있다.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1』 (北京: 中華書局, 2000), pp. 5-16.

96) 반고가 유흠의 칠략(七略)에 의거해 저작한 <<한서 예문지>>(漢書 藝文志)에는 춘추의 분류를 다섯 가지로 하고 있는데, 좌씨전 30권, 공양전 11권, 곡량전 11권, 추씨전 11권, 래씨전 11권을 거론하면서 추씨전은 전수할 선생이 없었고 래씨전은 단지 유향의 별록(別錄)과 유흠의 칠략(七略)의 도서목록에만 남아 있을 뿐 서적이 없고 실제로는 좌씨전, 공양전, 곡량전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공양전과 곡량전은 춘추의 서법(書法)만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른바 미언대의(微言大義)를 밝히고 그 실질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선양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좌전과 춘추의 관계는 좌전이 춘추의 경을 일부분 해설(傳)하고는 있지만 경의 해설방식이 공양과 곡량에 다르기 때문에 좌전은 당대 정치적 수호로부터 도출되었던 경(經)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저자문제와 관련해서 공자와 동시대인인 좌구명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입장과 서한 말기 유흠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이 공존한다. 좌전은 전문 19만 6천여 자로 구성되어 있고, 13경 중 가장 분량이 많아서 당대에는 대경(大經)으로 불렸다. 洪亮吉 撰, 李解民 點校, 『春秋左傳詁』 (北京: 中華書局, 1987), pp. 3-5.

하다. 즉 『左傳』이 공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역사해석이라면, 그 과정에서 『左傳』이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라는 방법을 통해 춘추시대를 여전히 예제와 종법질서의 규범이 작동했던 것으로 포장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이 성립가능한 것일까? 역설적으로 해당 단서는 “춘추에 실린 것 중에서 의로운 전쟁은 없다”⁹⁷⁾는 『孟子』의 단정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맹자의 판단대로라면 ‘군신 간, 부자 간 의리’를 강조하고 ‘권선징악’을 순리로 제시했다는 『左傳』의 역사해석이 ‘부정한 사실’을 은밀히 보여주려는 의도를 내포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左傳』이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라는 전제로부터 정치권위로서 패자의 물리적 폭력사용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임을 ‘의리’의 기준에서 추출하고, 이를 국가 간 동맹으로 확대하여 춘추시대의 전쟁을 ‘올바른 정치’와 정합하려는 것이었음을 밝히는데 있다.

II. 동맹의 규범성과 폭력성

『左傳』⁹⁸⁾은 그 내용 전반에 걸쳐 춘추시대 국가생존을 위한 열국 간 관계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주목해야 할 용어들은 ‘예’(禮)와 ‘맹’(盟)이다. 『左傳』에는 ‘예’의 견지에서 129회의 특수 행위를 평가하고 있으며, 예를 암시하는 단락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시에 ‘맹’에 대한 언급을 637회 담고 있고 국가 간 회합(會)의 상이한 형태들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는 특징을 지닌다.⁹⁹⁾ 물론 용어사용의 단순비교로 보자면 춘추시대 국가 간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회’(會) 또는 ‘맹’을 사용한 내용들이지만, 그 내면에 ‘예’를 내포한 예제의 기능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춘추시대에 예와 맹이 강조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출발점인 주(周) 왕조의 성립자체가 맹의 결합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주의 시조 후직은 이름이 기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 강원으로 불린다 … 고공단보에게는 장남인 태백과 차남인 우중이

97) 『孟子』「盡心下」, 2. “孟子曰, 春秋無義戰.”

98) 『左傳』의 저자와 저작시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견해는 『論語』에 언급된 좌구명(左丘明)과 동일인이라는 전제 하에 공자와 동일한 시기의 사관으로 공자가 편찬한 『春秋經』에 대한 주석가로 규정하지만, 현재의 연구경향은 현대 천문학, 음운학의 성과를 기초로 『左傳』의 성립시기를 전국시대 중기(B.C. 365) 이후의 작품으로 분석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史記』, 『漢書』 등 문헌에 나타난 각종 정황으로 추정해볼 때, 역사서는 저자가 단순히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료에 근거한 역사편찬이기에 『左傳』의 저자로서 좌구명 역시 이전부터 당시까지 사료를 장악한 기초 위에서 편찬하기 시작하여 세습사관인 그 후손이 이어서 기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左傳』의 편찬자와 시기를 추론하자면 춘추말기에서 전국초기 사이에 지어졌고 대표저자로 좌구명을, 그리고 『左傳』의 기사 속에 후대의 가필이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左傳』은 좌구명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左氏春秋』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후대 유가가 경전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春秋左氏傳』으로 개편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해성, “『左傳』의 저자와 저작시기에 관한 검토,” 『중국어문학논집』 64호(2010), pp. 543-549.

99) Mark Edward Lewis, *Writing and Authority in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p. 133.

있었다. 그의 아내 태강이 낳은 막내아들 계력은 태임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태강과 태임은 모두 어진 부인이었다. 태임이 창을 낳았을 때 성스러운 길조가 있었다 … 창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서백으로 서백은 후에 문왕이라고 불렸다”¹⁰⁰⁾는 본격적인 주 왕조의 등장 역시 강(姜)으로 명명되는 외부집단과 통혼에 기초한 결합, 즉 맹이었음을 시사한다.¹⁰¹⁾

주 왕조의 종법제도는 확대된 영토의 지배를 위해 전략적 요충지에 왕실 자제, 원근 일족 및 동맹부족 수장들을 제후로 분봉하여 제후국을 수립하여 토착민의 반란과 만이융적(蠻夷戎狄)으로 명명되는 영역 밖 집단들의 침탈에 대비하고 주 왕실의 강력한 무력을 배경으로 왕-제후 간 봉건적 복속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내용상 동일 혈연관계에 기초한 분가와 분가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었다.¹⁰²⁾ 『左傳』에서 주 천자(定王)가 활(滑)나라를 정벌한 정나라 백작(鄭成公)을 적(狄)의 군사로 정벌하려고 하자 “옛날 주공은 … 친척을 제후로 봉해 주 왕실을 둘러싼 울타리 나라로 삼았습니다. 관·채·성·곽·노·위·모·담·고·옹·조·등·필·원·풍·순 등의 나라는 문왕의 아드님들을 봉한 나라들이고 우·진·응·한 등의 나라는 무왕의 아드님들을 봉한 나라들이며 범·장·형·모·조·제 등의 나라는 주공의 자손들을 봉한 나라들”¹⁰³⁾이라는 신하 부진의 간언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제후의 분봉은 외부위협에 따른 군사적 ‘울타리’(藩屏)의 성격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춘추시대를 가져온 서주(西周)의 멸망도 내외 세력 간 ‘맹’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史記』는 주 유왕(幽王)이 왕비인 신후와 태자를 폐위시키자 그 아버지인 신후(申侯)가 증나라 및 견융과 함께 유왕을 공격해 죽였고 제후들이 신후와 함께 태자를 옹립해서 평왕(平王)을 즉위시켰다고 기술한다.¹⁰⁴⁾ 이 기사는 “유왕 9년 신후가 서융과 증나라를 불러들였다. 10년 봄 왕과 제후들이 태실에서 맹약했다”¹⁰⁵⁾는 『竹書紀年』의 기술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 당시 주 왕실의 제후와 외부세력 간 동맹체결의 흔적을 지적한다. 더욱이 서주의 멸망에 따라 평왕과 제후 간 맹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뒤 춘추시대가 시작했다는 점 역시 시

100) 『史記』 卷1, 「周本紀」, “周后稷, 名棄. 其母有邠氏女, 曰姜原 … 古公有長子曰太伯, 次曰虞仲. 太姜生少子季歷, 季歷娶太任, 皆賢婦人, 生昌, 有聖瑞 … 子昌立, 是爲西伯. 西伯曰文王.”

101) 팔켄하우젠은 주 왕실의 희성(姬姓)과 대부분의 왕비를 배출한 강성(姜姓)을 다른 집단으로 보는 시각은 이론의 소지가 크지만 『左傳』이 작성된 시기까지 희성과 강성은 다른 씨족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고고학적 문헌자료는 중국사회가 자신들 스스로를 이민족 집단과 혈연 두 드러진 상대성을 가지고 정의하는 반면 씨족 수준의 특이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해준다고 한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씨족을 지칭하던 성(姓)이 현재 통용되는 성(surname)의 의미를 지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족외혼 집단을 명시하고 있는데 상(商)대까지 족내혼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대에 이르러 씨족 외혼제의 새로운 변혁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로타 본 팔켄하우젠, 심재훈 역,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서울: 세창 출판사, 2011), p. 226.

102) 이춘식,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형성과 조공외교,” 『동양정치사상사』 5권 2호(2006), p. 195.

103) 『左傳』「成公14年」, “王怒, 將以狄伐鄭. 富辰諫曰, 不可. 臣聞之, 大上以德撫民, 其次親親, 以相及也. 昔周公 … 故封建親戚以蕃屏周. 管蔡郟霍魯衛毛聃郟雍曹滕畢原鄭郟, 文之昭也. 邲晉應韓, 武之穆也. 凡蔣邢茅胙祭, 周公胤也.”

104) 『史記』 卷1, 「周本紀」, “又廢申后, 去太子也. 申侯怒, 與繒西夷犬戎攻幽王 … 於是, 諸侯乃即申侯而共立, 故幽王太子宜臼, 是爲平王.”

105) 『竹書紀年』「幽王」, “九年, 申侯聘西戎及郟. 十年, 春, 王及諸侯盟于太室.”

사적이다. 결국 춘추시대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했던 ‘맹’은 역사과정의 연속 선상에서 배출된 산물인 셈이다.

『春秋』는 노나라 은공(魯隱公) 원년(B.C. 722)부터 시작하는데, 첫 기사가 “3월 공이 주나라 의보와 멸에서 맹약했다”(三月, 公及邾儀父盟于蔑)는 것이고, 2년(B.C. 721) 첫 기사는 “공이 잠에서 용과 회합했다”(二年春, 公會戎于潛)는 것이다. 이에 대해 『左傳』은 “은공이 주나라 의보와 멸에서 맹약했다고 하는데 의보는 주나라 자작 국이다. 아직 천자가 제후에게 명을 내리지 않았기에 작위를 쓰지 않았고 그를 의보라고 말한 것은 그를 귀하게 여겨서이다. 은공이 섭정의 위치에서 주나라와 우호관계를 구하려 했으므로 멸의 맹이라고 한다”¹⁰⁶⁾고 풀이하는 반면, “2년 봄에 은공이 잠에서 용과 만난 일은 혜공시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용에서 맹약 맺기를 청했으나 공이 사절했다”¹⁰⁷⁾고 풀이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左傳』이 제시하는 세 가지 설명-첫째, 노은공의 섭정 위상, 둘째 주나라와 용의 위상, 마지막으로 맹약과 회합의 의미-의 해석방식이다. ‘맹’의 사전적 의미는 ‘맹세하다,’ ‘맹약을 맺다,’ ‘동맹을 맺다’와 같은 의미로 풀이되는데 문자의 형태상 신명(神明)과 그릇(皿)을 복합한 의미이다. 따라서 어원상으로 ‘맹’은 ‘희생(犧牲)의 피를 그릇에 받아 이를 돌려 마시며 신명에게 약속했던’ 일종의 행위과정으로부터 파생된다. 따라서 ‘맹’은 초월적 권위와의 체결인 동시에 당사자 간 체결행위였다.¹⁰⁸⁾ 그렇게 보자면 노나라 은공이 주나라 자작과 맹약을 맺은 반면 여전히 외부 행위자에 불과한 용과는 회합만으로 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맹’의 관계성에 내재한 예제의 선별적인 작동을 시사한다.

반면 ‘회’의 의미는 “무릇 군사를 출동시킬 때 서로 더불어 도모한 것은 급이라 말하고 서로 더불어 도모하지 않은 것은 회라고 한다”(凡師出, 與謀曰及, 不與謀曰會. 『左傳』「宣公7年」)는 설명에서 보이듯이, ‘맹’ 이전의 불확정 상태를 의미한다.¹⁰⁹⁾ 예를 들어 “가을 공이 진나라 후작과 송나라 공작과 위나라 후작과 정나라 백작과 조나라 백작과 흑양에서 회합했다”(秋, 公會晉侯宋公衛侯鄭伯曹伯于黑壤)라는 『春秋』의 경(經)에 대한 『左傳』의 설명은 “노선공(魯宣公)이 진성공(晉成公)의 즉위식에 대부에게조차 예방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이 회합자리에서 선공을 잡았으므로 황보에서 동맹을 맺는 일에 공은 참여하지 못했다. 공은 뇌물을 주고 어려운 처지를 모면했다. 그러므로 경에는 흑양의 맹이라고 쓰지 않았

106) 『左傳』「隱公1年」, “三月, 公及邾儀父盟于蔑, 邾子克也. 未王命, 故不書爵. 曰, 儀父, 貴之也. 公攝位而欲求好於邾, 故爲蔑之盟.”

107) 『左傳』「隱公2年」, “二年春, 公會戎于潛, 修惠公之好也. 戎請盟, 公辭.”

108) 윤대식, “동맹에서 부국강병으로.” 『국제정치논총』 44집 3호(2004), p. 4.

109) 박세채의 『春秋補編』에는 ‘모든 맹약을 기록함에 있어 내국이 회맹을 주도했으면 ‘급’(及), 외국이 주도했으면 ‘회’(會)라 칭한다. 비록 노나라 땅에서 회맹했을 경우에도 외국이 주도했으면 ‘급’으로 칭하니 이는 저 외국인이 와서 미쳤다는 뜻이고 두 나라 이상이 회맹했을 경우에 ‘회’라고 칭하니 이는 외국의 회맹에 가서 회합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한다. 정태현 역주, 『譯註 春秋左氏傳 1』 (민족문화연구회, 2001), p. 158.

다”¹¹⁰⁾는 것이다. 즉 ‘회’는 ‘모의’(謀. 『左傳』「僖公3年」)하는 것이라면, ‘맹’은 ‘복종을 요청’(請服. 『左傳』「僖公8年」)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맹의 체결은 불안정하고 대립의 관계를 규범에 기초한 안정적인 신뢰 관계로 구조화하는데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左傳』에는 동맹을 의미하는 ‘맹’(盟)이 빈번하게 나오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무릇 제후의 패자가 환난을 구제하고 재앙을 나누며 허물이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은 예에 맞는 일”¹¹¹⁾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은 “무릇 군사의 일은 종과 복을 치면서 쳐들어가는 것은 벌이라 말하고 그것이 없이 쳐들어가는 것은 침이라 말하며 방비하지 않고 있을 때 쳐들어가는 것은 습이라고 말한다”¹¹²⁾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벌’(伐), ‘토’(討), ‘침’(侵), ‘공’(攻) 등으로 물리적 폭력사용의 동기에 따라 정당함과 부당함을 선별하고 “무릇 상대방의 나라를 싸워 망하게 하면 멸이라 하고 큰 성을 점령하면 입이라 한다”¹¹³⁾고 ‘멸’(滅), ‘입’(入)으로 폭력의 결과를 달리 구별함으로써 패자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사용과 그 결과를 합리화한다. 예를 들어 『左傳』에서 제환공이 자신의 망명생활 중 소홀했던 담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그 동기가 담나라의 무례(冬, 齊師滅譚, 譚無禮也. 『左傳』「莊公10年」)에 있었다는 설명은 합의된 규범의 일탈에 대한 정당한 응징으로 합리화하는 반면 제후들이 송나라를 위해 예나라를 정벌하는 와중에 정나라가 송나라를 침범하자 제환공이 정나라를 정벌하는데 “제후들이 정나라를 정벌한 것은 송나라를 위해서였다”(十六年, 夏, 諸侯伐鄭, 宋故也. 『左傳』「莊公16年」)라는 설명에서는 폭력성을 합의된 공적 규범의 보존에 사용하는 절제를 부각시킨다.

춘추시대 국가생존은 패자-열국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기에 패자에 의한 동맹체제에 집중된다. 동맹은 현실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한 동시에 형식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호성으로 말미암아 쌍무적 관계로의 규범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동맹의 규범성은 멸국병합의 명분으로도 작동한다. 즉 국가의 물리적 폭력사용과 동원은 예제 이행의무를 일탈한 자에 대한 응징이며, 그 자체가 ‘올바른’ 행위로 정당화되었다. 동시에 동맹의 규범성은 열국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함으로써 열국의 패권경쟁을 상호 규제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규범성과 폭력성이 공존하는 모순이 존재하지만, 춘추의 모순을 아우르는 결정체는 바로 패(霸)였다.¹¹⁴⁾

『左傳』은 “큰 나라는 의로써 제후국들을 통제하여 맹주가 되었고 이 때문에 제후들은 그 덕을 따르고 토벌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 … 믿음으로써 의를 행하고 의로써 옳은 명령이 된다”¹¹⁵⁾는 인식을 소개하면서 ‘패’의 권위가 ‘맹’을 통한 상호 신뢰와

110) 『左傳』「宣公7年」, “晉侯之立也, 公不朝焉, 又不使大夫聘, 晉人止公于會. 盟于黃父, 公不與盟. 以賂免. 故黑壤之盟不書.”

111) 『左傳』「僖公1年」, “凡侯伯, 救患, 分災, 討罪, 禮也.”

112) 『左傳』「莊公29年」, “凡師, 有鐘鼓曰伐, 無曰侵, 輕曰襲.”

113) 『左傳』「文公15年」, “凡勝國, 曰滅之. 獲大城焉, 曰入之.”

114) 『左傳』에서 “널리 혜택을 베풀어 제환공이 패자가 된 것”(能施也. 桓公是以霸. 『左傳』「昭公10年」)이라는 평가는 제환공이 최초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저변의 의미를 시사하는데, 스스로를 ‘패’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호혜성을 보장할 의지와 실천이라는 ‘신의’(信義)에서 비롯한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결국 『左傳』은 외형상 예제와 규범, 그리고 의리(義理)에 기초한 국가 관계와 행위를 기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적 의도는 현실정치의 근거로 패자가 ‘예’와 ‘올바름’의 명분을 선점했느냐에 주목했던 것이다.

III. 춘추의 전쟁은 의리(義理)의 전쟁인가?

1. 생존수단으로서 전쟁

춘추시대 국가 간 관계구조는 패자가 지닌 양면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명목상 ‘주 왕실과 열국의 관계’와 실질적인 ‘패자와 열국의 관계’라는 이중구조의 특징을 내포하며, 이로 인해 각 국은 자신의 종법적, 현실적 위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생존의 여지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동맹을 통한 국가 간 연대 역시 형식적으로 규범성에 구속받는 안전장치로 작용한 동시에 노골적인 전쟁의 도덕적 명분으로 채택되어 전쟁의 합리화와 가속화를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했다.

비록 예제의 작동으로 인해 국가 간 전쟁조차 가족적 유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상호부조의 관념이 전쟁의 잔혹함을 완화시켰을지라도, 춘추시대 열국 관계에서 가장 선호한 문제해결기제는 전쟁이었다.¹¹⁶⁾ 그 원인은 춘추시대를 가져온 열국 관계의 구조에서 찾아진다. “평왕 말년에 진·진·제·초가 번갈아 일어나 제경공과 양공이 이 때 주나라의 땅을 차지했고 진문후가 이때 천자를 안정시켰고 제장공과 희공이 이때 조그만 패자가 되었으며 초나라 분모가 이때 비로소 보까지 국토를 넓혔다”¹¹⁷⁾는 『國語』의 기사는 열국 관계에서 전쟁을 선택하게 된 배경설명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주 평왕의 동천과정에 공헌하고 주 왕실과 전쟁을 통해 패권적 지위에 이르렀던 정나라의 행위는 향후 ‘패’(霸)의 출현에 따라 열국 관계에서 전쟁이 갖는 중요성을 예단하는 사례이다.

우선 동맹의 현실적 무력함은 『左傳』의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정나라 무공과 장공이 평왕을 위해 경사가 되었다. 왕이 께나라에 맡기려 하자 정나라 백작이 왕을 원망했다. 이에 왕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주나라와 정나라는 인질을 교환하여 왕자 호가 정나라에 인질로 갔고 정나라 공자 홀이 주에 인질로 갔다 … 이 사실을 두고 군자는 말했다. 믿음

115) 『左傳』「成公8年」, “大國制義, 以爲盟主, 是以諸侯懷德畏討, 無有貳心 … 信以行義, 義以成命.”

116) 허탁운(許倬雲)에 따르면 주요 열국의 전쟁참가를 1로, 약소 열국의 전쟁참가를 0.5로 계산할 경우, 총 전쟁횟수는 1,211회를 넘으며 전쟁이 없던 시기는 38년에 불과하다. Cho-yun Hsü, *Ancient China in Transi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pp. 54-56.

117) 『國語』「鄭語」, “及平王之末, 而秦晉齊楚代興, 秦景襄於是乎取周土, 晉文侯於是乎定天子, 齊莊僖於是乎小伯, 楚鬻冒於是乎始啓濮.”

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인질이 유익함이 없다 … 하물며 군자로서 두 나라 사이의 신의를 맺고 예의로써 그것을 행함에 있어 또 어찌 인질을 이용한다는 것인가?”¹¹⁸⁾라는 『左傳』의 소개는 동맹이 신의에 기초한 예제의 작동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더욱이 주 왕실 보전에 꾀나라와 더불어 정나라의 역할이 상당부분 인정된다 할지라도, 주 왕실에 대한 정나라의 태도는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듯 보인다.

양자의 갈등(B.C. 707)은 평왕 사후 환왕(桓王)에 이르러 폭발한다. “천자가 정나라 백작의 정권을 빼앗자 정나라 백작이 조회하지 않았다”(王奪鄭伯政, 鄭伯不朝. 『左傳』「桓公5年」)는 기사는 주 왕실과 정나라 간 관계에 더 이상 예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형식상의 예제만으로도 관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주 천자의 선택 역시 폭력에 의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로 “가을 천자가 제후들을 이끌고 정나라를 정벌하고 정나라 백작은 그것을 막았다 … 채·위·진나라 군대가 모두 달아나자 천자의 군사들도 혼란에 빠졌다. 정나라 군사가 힘을 합해 공격하자 천자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축담이 천자에게 활을 쏘아 어깨를 맞혔고 천자 또한 잘 싸웠다”¹¹⁹⁾는 『左傳』의 기사는 춘추시대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주 왕실의 자가당착에서 비롯했다. 즉 주 왕실은 자신을 보전한 종법관계의 제후국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부정과 함께 패전으로 인한 권위의 추락을 가져왔으며, 동시에 주 왕실조차도 자기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열국과의 관계를 폭력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천자는 성토하되 정벌하지 않고 제후는 정벌하되 성토하지 못한다”¹²⁰⁾는 원칙을 고려할 때, 주 왕실의 선택은 더 이상 종법질서의 정점에 놓인 주재자가 아닌 국가이익을 위한 또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이 전쟁에 대한 『左傳』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군자는 윗사람을 능멸하지 않는다. 하물며 감히 천자를 능멸하겠는가?”(君子不欲多上人, 況敢陵天子乎? 『左傳』「桓公5年」)라는 정장공의 토로는 주 왕실과 예제의 무력화가 주 천자의 합리성 결여에 기인했다고 평가하는 셈이다.¹²¹⁾

정나라와 주 천자 간 전쟁의 사례가 정나라의 국가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라면, 그 반대의 사례는 춘추시대 열국의 동기와 상관없이 ‘패’에 의해 생존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 출발 역시 주 천자의 무력함과 이기적 욕망에 기인한다. “혜왕이 즉위하고 위국의 채전을 빼앗아 정원을 만들고 변백의 집이 왕궁과 가까워 빼앗았고 자금, 축

118) 『左傳』「隱公1年」, “鄭武公莊公爲平王卿士. 王貳于虢. 鄭伯怨王. 王曰無之. 故周鄭交質. 王子狐爲質於鄭. 鄭公子忽爲質於周 … 君子曰, 信不由中, 質無益也 … 而況君子結二國之信, 行之以禮, 又焉用質?”

119) 『左傳』「桓公5年」, “秋, 王以諸侯伐鄭, 鄭伯御之 … 蔡衛陳皆奔, 王卒亂, 鄭師合以攻之, 王卒大敗. 祝聃射王中肩, 王亦能軍.”

120) 『孟子』「告子下」, 7, “是故天子討而不伐, 諸侯伐而不討.”

121) Hsü(1999), 앞의 글, p. 552.

래, 첩보의 전담을 빼앗고 천자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의 관직을 거두었다 … 위·연나라 군사가 주 왕조를 정벌하여 겨울에 자퇴를 천자로 세웠다”¹²²⁾는 『左傳』의 기사(B.C. 675)는 대부분의 사유재산에 대한 주 천자의 강탈이라는 규범의 일탈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결과 위·연의 주 천자 정벌은 예제회복의 단서조차 없애버린 셈이다. 왜냐하면 일탈적인 주 천자에 대한 도덕적 응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천자의 옹립이라는 찬탈(篡奪)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자가 소백료에게 제나라 후작에게 패자가 되라는 명을 하사하게 하고 위나라를 정벌하라고 요청하게 했는데 그것은 자퇴를 세웠던 일로 인해서였다”¹²³⁾는 『左傳』의 해설은 패자의 출현배경으로 더 이상 질서의 통합적 주재자라는 순기능을 포기하고 사적 욕망에 압도되어버린 주 천자와 함께 ‘패’의 공정함과 합리성을 대조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주 천자인 혜왕의 불합리함에 대응하는 제환공의 행위는 예제의 존중과 사적 이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左傳』은 제환공이 혜왕의 사적 복수 요구에 따른 정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유(幽)의 동맹’(B.C. 667)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위나라를 정벌함으로써 천자의 명을 헤아려 책망하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다(齊侯伐衛, 戰, 敗衛師, 數之以王命, 取賂而還. 『左傳』「莊公28年」)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연나라를 응징하기보다 동맹을 체결한 이유는 “산융을 정벌할 일을 피하기 위해서”(謀山戎也, 以其病燕故也. 『左傳』「莊公30年」)라는 현실적 수요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것은 행위결과에 대한 응징의 주체가 언제든지 패자임을 과시하는 한편, 역설적으로 위·연의 동기가 지닌 순수성과 상관없이 패자로서 제환공의 역할이 예제의 외연을 북방 이민족 침략으로부터 보전(尊王洋夷)하는데 있었기에, 위·연과의 동맹체결이야말로 협력자를 끌어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따라서 “제후들을 이끌어서 제후들을 친”(摟諸侯, 以伐諸侯者也. 『孟子』「告子下」) 제환공-진목공-송양공-진문공-초장왕 등 춘추오패 역시 주 왕실을 정점으로 하는 예제의 외연을 유지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확장의 내포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²⁴⁾ 그 과정에서 전쟁승리를 위한 군사적·외교적 능력의 필요성이 중요해졌고 이를 뒷받침한 제후와 경·대부의 권력 확대는 규범에 기초한 예제보다 실력에 기초한 공적주의(meritocracy)로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로 작용하며, 최종적으로 22국만이 생존한다.¹²⁵⁾

122) 『左傳』「莊公19年」, “及惠王即位, 取蔦國之圃以爲圃. 邊伯之宮近於王宮, 王取之. 王奪子禽祝鮀與詹父田, 而收膳夫之秩 … 衛師燕師伐周. 冬, 立子頹.”

123) 『左傳』「莊公21年」, “王使召伯廖賜齊侯命, 且請伐衛, 以其立子頹也.”

124) 『左傳』은 덕(德)을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국가를 지탱해 주는 강력한 힘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유덕자의 존재를 정당한 정치권위로 규정하는 것인데, 권위의 실질적인 힘으로 형(刑)과 위(威)의 검전을 요구함으로써 군주가 유덕함과 형위의 수단을 모두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 결과 정치권위의 덕은 천하-국가의 통치에서 신뢰를 유도할 수 있는 고유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엄연석, “『춘추』에서 신뢰 개념과 정치적 이상,” 『중국학보』 84집(2003), p. 626.

125) Hsü(1965), 앞의 책, pp. 57-59.

2. 전쟁의 도덕적 합리화

춘추의 전쟁은 패자와 열국 모두에게 존망의 명분과 실질을 획득하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전쟁의 실질은 파괴와 강탈을 동반하기에 도덕적 가치를 수반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를 지닌다. 즉 주 천자 스스로가 예제의 일탈 행위를 통해 패자에게 예제의 보전과 준수를 기대함으로써 춘추의 질서는 패자의 자발적 규범성에 종속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규회맹 직전의 ‘수지(首止)동맹’에서 나타난다.

비록 명분과 실질이 부합되지 못했을지라도 제환공의 제후연합에 의해 초나라의 북방진출이 좌절된 다음해 “회공이 제나라 후작과 송나라 공작과 진나라 후작과 위나라 후작과 정나라 백작과 허나라 남작과 조나라 백작이 주 천자의 세자와 수지에서 회합했다. 가을 8월에 제후들이 수지에서 동맹을 맺었다. 정나라 백작이 도피해서 돌아가 동맹을 맺지 않았다”(公及齊侯·宋公·陳侯·衛侯·鄭伯·許男·曹伯會王世子于首止. 秋八月諸侯盟于首止. 鄭伯逃歸不盟)는 『春秋』의 기사는 패자에 의한 질서가 기존의 회합-동맹체결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동맹과기가 아닌 불참의 이유만으로도 정벌의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향후 전쟁의 도덕적 명분확보로 전환될 것임을 예단한다. 『左傳』은 그 이유를 주 천자와 정나라의 도덕적 일탈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수지에서 회합한 것은 천자의 태자인 정과 만나서 주 왕조를 편안하게 할 일을 도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 혜왕이 “주공에게 정나라 백작을 부르게 하여 내 그대를 사랑하여 초나라로써 따르게 하며 진나라로써 돕게 할 것”이라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⁶⁾

반면 『左傳』은 제환공의 대응이 예제의 규범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정벌행위를 도덕적 응징으로 정당화한다. 『左傳』에서는 제·노·송·진·위·조의 연합에 의한 “제후들이 정나라를 정벌한 것은 정나라 군주가 수지의 동맹을 어기고 도피했기 때문”(夏, 諸侯伐鄭, 以其逃首止之盟故也. 『左傳』「僖公6年」)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나라 정벌과정에서 “가을 7월 회공이 제나라 후작과 송나라 공작과 진나라 세자 관과 정나라 세자 화와 회합하여 영무에서 동맹을 맺었다”(秋, 七月, 公會齊侯·宋公·陳世子欸·鄭世子華, 盟于甯母)는 『左傳』의 기사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규범적 수단으로 정나라를 응징했음을 보여준다.¹²⁷⁾

126) 『左傳』「僖公5年」, “會王太子鄭, 謀寧周也 … 王使周公召鄭伯, 曰, 吾撫女以從楚, 輔之以晉, 可以少安.”

127) 토마스 아퀴나스는 허용 가능한 전쟁으로 정의로운 전쟁(justum bellum)을 규정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그것은 첫째 전쟁선포와 수행자로서 군주의 권한, 둘째 정당한 근거, 셋째 전쟁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의 올바른 의도이다. 특히 정당한 근거란 전쟁을 초래한 잘못이 한 민족이나 국가의 부당함인데 자국민이 저지른 무도한 행위를 정벌하는데 태만하고 자국민이 부당하게 강탈한 것을 되돌려주는데 소홀함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채이병,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평화의 문제,” 『철학』 78집(2004), pp. 89-91. ; 물론 제환공의 제후연합과 정벌행위가 아퀴나스의 정의로운 전쟁 개념에 부합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左傳』에서 제환공의 정벌행위를 패자에 의한 존왕양이의 실천으로 설명하는 방식 역시 제환공의 규범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상기하자면, 고대 의전관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左傳』의 강조점이 나타난다. 『左傳』은 전쟁이 아닌 ‘영무동맹’ 체결의 원인을 제환공과 관중의 합리성으로 설명한다. 정나라 세자 화가 정나라의 유력씨족을 제거하고 제환공의 내신(內臣)이 되겠다고 제안하자, 관중은 수락의사를 보이려는 제환공에게 “군주께서 예와 신으로 제후들을 복속하게 하고는 간악함으로 끝맺으려 함은 옳지 못하다”고 간언하면서 “제후들의 모임에는 그 때의 덕과 형과 예와 의를 기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간악한 사람이 자리를 같이 했음을 기록하면 군주께서 맺은 동맹은 가치 없는 일이 될 것 … 정나라는 반드시 동맹을 수락할 것인데 공자 화는 이미 태자가 되었으면서도 큰 나라에 의지할 것을 구하여 그 나라를 약하게 하니 또한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할 것”¹²⁸⁾이라고 단정한다. 그것은 예제를 보전해야 하는 패자의 책무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관중의 간언을 통해 이 사건을 설명하려는 『左傳』의 의도는 명백하다. 즉 정나라와 제나라의 종법적 위계상 정나라가 제나라의 내신이 되는 것을 수락하는 것 자체가 제환공의 자가당착을 보여 줄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국가존망의 공적 문제를 사적 이익의 추구에 부합시키려는 의도 자체가 예제의 일탈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현실정치의 기준에 대한 몰이해임을 가리키려는 것이다.

제환공의 전쟁수행은 남북으로 진행된 예제의 외연을 보전하는 것으로 패자로의 책무이행이기도 하다. 우선 노민공(魯閔公) 1년 “제나라 사람이 형나라를 구원했다”(元年, 春, 王正月, 齊人救邢)는 경문에 주목하자면, 『左傳』의 설명은 “적인이 형나라를 정벌했는데 관중이 제나라 후작에게 용과 적은 승냥이나 이리와 같아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고 제하의 나라들은 친하고 가까이 해야 하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¹²⁹⁾ 형나라를 구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제의 외연으로서 중국(中國)의 관념을 제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패자의 책무로서 존망계절(存亡繼絕)의 관념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적인에 의해 위(衛)나라가 멸망한 직후 형나라에 대한 재침과정에서 “제나라 군사와 송나라 군사와 조나라 군사가 형나라 땅에 성을 쌓았다”(齊師宋師曹師, 城邢)는 경문에 대해 『左傳』에서 “제후들이 그곳에 성을 쌓은 것은 형나라의 환난을 구제한 것이다. 무릇 패자가 타국의 환난을 구제하고 재앙을 나누며 허물이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은 예에 맞는 일”¹³⁰⁾이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었을 것”¹³¹⁾이라는 공자의 찬양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다른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거론할 수 있다. 즉 패자의 전쟁수행이 예제의 유지라는 외연과 사적 복수라는 내면의 동기가 교차한 결과들이었던 경우

128) 『左傳』「僖公7年」, “管仲曰, 君以禮與信屬諸侯, 而以姦終之, 無乃不可乎? … 夫諸侯之會, 其德刑禮義, 無國不記. 記姦之位, 君盟替矣. 作而不記, 非盛德也. 君其勿許! 鄭必受盟. 夫子華既爲大子, 而求介於大國以弱其國, 亦必不免.”

129) 『左傳』「閔公1年」, “狄人伐邢. 管敬仲言於齊侯曰, 戎狄豺狼, 不可厭也, 諸夏親暱, 不可棄也.”

130) 『左傳』「僖公1年」, “諸侯城之, 救患也. 凡侯伯, 救患, 分災, 討罪, 禮也.”

131) 『論語』「憲問」,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이다. 우선 외연의 유지라는 맥락에서 초기 열국관계를 주도했던 정장공(鄭莊公)이 개입한 ‘북융과의 전투’(B.C. 713)와 그 내면화로서 ‘낭(郎)의 전투’는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북융이 제나라를 정벌하자 제나라에서 사자를 보내 구원병을 청했는데 정나라 태자 홀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제나라를 구원했다 … 제후의 대부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는데 제나라 사람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에 노나라에게 그 차례를 정해 분배하게 했다. 정나라를 제일 뒤로 미루자 정나라 태자 홀이 공이 있음을 내세워 노했는데 이 때문에 낭의 싸움이 있었다”¹³²⁾는 해설은 전쟁의 원인이 예제의 유지라는 외형과 사적 복수라는 내면의 동기가 교차한 것임을 반영한다. 물론 아직 패자로의 위상을 갖지 못했던 제나라의 위기에 당시 패권적 지위에 놓인 정나라의 구원은 예제의 외연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책무의 이행이었지만, 그 보상기준은 현실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주 왕실과 동성인 노나라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종법질서에 따른 것이지만 이적의 침입을 실력으로 막은 정나라의 공헌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였다.

또 다른 사례는 새로운 패자로서 진(晉)나라에 의해 멸망한 우(虞)나라의 불합리성에서 찾아진다. 진나라는 천자를 배신했던 곡옥(曲沃)지역(『左傳』「隱公5年」)을 장악하여 주 왕실로부터 작위를 부여받아 예제의 외연을 번영하는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했는데, 그것은 기존 번영으로서 곡·우의 위상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진나라가 주례적 질서 내로 편입한 이상, “가을에 곡나라 사람이 진나라를 침범했고, 겨울에 곡나라 사람이 또 진나라를 침범했다”(秋, 虢人侵晉. 冬, 虢人又侵晉. 『左傳』「莊公26年」)는 기사는 곡나라의 행위가 공적 책무를 넘어서 불순한 사적 동기에서 비롯된 부당한 침략임을 암시한다. 반면 곡나라의 침탈에 대응하려는 진헌공(晉獻公)에게 “곡나라 공작은 교만하니 여러 번 우리나라에 승리를 거두면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지 않을 것 … 예약과 자애로움은 싸움에서 힘을 비축하는 일이요, 백성은 일에 대해 서로 사양하고 평화를 즐거워하며 육친을 사랑하고 상을 슬퍼하게 된 뒤라야 부릴 수 있다”¹³³⁾는 사위(士蒍)의 조언은 진문공의 패업에 대한 『左傳』의 긍정적인 평가를 예단한다. 이로부터 진헌공이 이군(二軍)으로 군사력을 확장해서 경·곽·위나라를 멸망시키고(以滅耿, 滅霍, 滅魏. 『左傳』「閔公1年」) 우나라를 끌어들이 곡나라를 공격하여 하양을 멸망시켰다(晉里克, 荀息帥師會虞師, 伐虢, 滅下陽. 『左傳』「僖公2年」)는 기사는 ‘패’의 전쟁과 열국의 멸망 모두 사적 이익에 경도된 일탈의 결과임을 방증한다.

사실 제환공의 전쟁수행 역시 이러한 사적 동기를 공적 책무로 은폐하는데 성공한 경우도 있다. 제환공의 패권적 질서에 도전과 위협은 초나라의 정나라 정벌(楚人伐鄭. 『春秋』「

132) 『左傳』「桓公6年」, “北戎伐齊, 齊使乞師于鄭. 鄭大子忽帥師救齊 … 齊人饋之餼, 使魯爲其班. 後鄭鄭忽以其有功也, 怒, 故有郎之師.”

133) 『左傳』「莊公27年」, “虢公驕, 若驟得勝於我, 必棄其民 … 夫禮樂慈愛, 戰所畜也. 夫民, 讓事樂和愛親哀喪, 而後可用也.”

僖公3年)이었다. 『左傳』에는 “가을 제나라 후작과 송나라 공작과 강나라 사람과 황나라 사람이 양곡에서 회합했다”(齊侯宋公江人黃人會于陽穀)는 경문의 설명으로 “초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모의”(會于陽穀, 謀伐楚也. 『左傳』「僖公3年」)라는 목적이었음을 기술하는데, 제환공의 회합은 제·송·진·위·정·허·조·노의 연합을 통해 채(蔡)나라 침공으로 전개된다. 우선 채나라 침공은 제환공 개인의 사적 복수에서 비롯하고 초나라 정벌의 지정학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패의 사적-공적 동기 모두가 작용한 결정인 셈이다.¹³⁴⁾ 따라서 ‘채나라 침공’(侵蔡)이라는 『左傳』의 표현은 패자의 자의적인 동기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탈성은 초나라 정벌에 대한 명분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정벌의 실패로 귀결된다. 다음해인 노희공 4년(B.C. 657)에 이루어진 초나라 정벌의 이유로 “천자께서 드리는 제사에 제물이 바쳐지지 못하고 제사 술을 제대로 걸러서 올릴 수가 없으므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천자이신 소왕께서 남쪽을 순수하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으니 그것을 묻는 것”¹³⁵⁾이라는 제환공의 명분은 외형상 예제유지의 주재자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스스로의 일탈적 동기로 인해 규범적 일탈의 책임을 초나라에 부담시키는 변명이기도 했다.

초나라는 주례적 질서의 밖에 놓여 있었기에 제환공이 요구하는 책무의 이행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左傳』에 소개된 초 성왕(楚成王)의 답변은 공물을 올리지 않은 잘못의 시인과 함께 과거 주 소왕의 죽음이 부당한 초나라 침공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새로운 규범으로 호혜성을 강조한다. 결국 양자의 대치는 “어찌 내가 싸우는 것이 옳겠는가? 선군 때 맺은 우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것”이라는 제환공의 명분에 “덕으로 제후들을 다스린다면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으며 힘으로 대한다면 … 비록 많은 군사라 해도 쓸 곳이 없을 것”이라는 굴완(屈完)의 대응으로 종결된다.¹³⁶⁾

『春秋』는 그 결과를 “초나라 굴완이 와서 군사동맹을 하고자 하여 소릉에서 동맹을 맺었다”(楚屈完來, 盟于師, 盟于召陵. B.C. 657)로 기록하는데, 초나라가 제나라에게 ‘왔다’(來)고 표현함으로써 제나라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군사동맹’(盟于師)을 체결했다는 내용에서 ‘맹’의 의미가 패권적 지위를 가진 제후국 간 균형의 의미로 전환되는 계기를 반영한다. 그 결과 제나라는 규구회맹을 통해 주 천자로부터 패자의 지위를 확인받고 기존 예제의 외연유지야말로 패자의 책무임을 입증한다. 따라서 앞서 내부의 열국을 병합하는데 몰두한 진(晉)의 패권행사와 외연을 방어하는데 몰두한 제(齊)의 패권행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임을 대조할 수 있다.¹³⁷⁾ 『左傳』은 그 차이점을 내외 문제에 대한 각각의 ‘올바름’으로 합리화

134) 제환공이 채희와 뱃놀이를 하면서 채희가 희롱하자 채나라로 돌려보냈지만 인연을 끊지 않았는데 제환공에게 통보도 없이 채나라 사람이 다른데로 채희를 시집보냈다. 『左傳』「僖公3年」.

135) 『左傳』「僖公4年」, “爾貢包茅不入, 王祭不共, 無以縮酒, 寡人是徵. 昭王南征而不復, 寡人是問.”

136) 『左傳』「僖公4年」, “齊侯曰, 豈不穀是爲? 先君之好是繼 … 君若以德綏諸侯, 誰敢不服? 君若以力 … 雖衆, 無所用之.”

137) 제환공의 규구회맹과 진문공의 천토회맹은 양자를 모두 패자로 인정한 것이지만, 그 실질은 큰 차이를 갖는다. 제환공이 존왕양이의 구체적 목적을 제시했다면, 진문공은 구체적 행위와 이에 근거한 질서구축을 결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문공의 경우 존왕만을 강조했을 뿐 양이에 대한 어떠한 언

한 셈이다.¹³⁸⁾

IV. 전쟁의 이면: 폭력의 은폐와 도덕의 균형

1. 숨겨진 폭력에 기초한 진문공의 패

만약 춘추시대 패자에 의해 주도된 전쟁의 실질이 도덕적 합리화에 의해 은폐되었다면, “춘추에 의로운 전쟁은 없다”(春秋無義戰, 『孟子』「盡心下」)는 단정처럼,¹³⁹⁾ 『左傳』의 평가야말로 역설적으로 춘추시대 정치의 본질이 도덕과 폭력의 교차였음을 반증한다. 그것은 춘추시대 국가 간 관계가 도덕과 명분이라는 ‘의리’의 안전장치로 인해 질서를 유지했던 일면뿐 아니라, ‘의리’의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일탈의 가능성이 상존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정말 『左傳』은 춘추의 전쟁이 ‘올바름’에 기초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까?¹⁴⁰⁾ 『左傳』은 첫 부분에서 주 천자와 제후국인 정나라의 규범적 일탈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이로부터 예제의 준칙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 사례는 위장공(衛莊公)에서 위환공(桓公)으로의 계승과정에서 발생한 왕자 주우(州吁)의 폭력성과 일탈성의 응징이다. 위환공으로의 계승을 기대한 위장공의 제안에 “군주는 의롭고 신하는 그것

급도 없었으며, 천자를 회맹에 소환한 태도 자체가 진문공의 존왕 역시 명목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이즈카 시케키·이토 미치하루, 배진영·임대희 옮김, 『중국의 역사-선진시대』 (서울: 혜안, 2011), p. 260.

138) 정명(正名)의 맥락에서 공자는 제한공 평가와 달리 “진문공은 속이고 바르지 않다”(子曰, 僂文公, 譎而不正. 『論語』「憲問」)고 평가하지만, 제한공=正, 진문공=不正의 등식이 성립될 수는 없다. 아마도 공자의 의도는 제한공이 비교적 진문공보다 중정(中正)에 근사했을 뿐 ‘올바름’에 완전히 부합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안춘분, “『春秋』로 본 제후 제한공과 진문공의 정명론,” 『유교사상연구』 42집(2010), p. 142.

139) 맹자는 전쟁의 도구적 효용성까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정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맹자는 의전(義戰)으로 명명한 정당한 전쟁을 도덕적 상위자에 의한 하위자의 처벌과 응징으로 합리화했다. 그와 같은 사례는 맹자가 제선왕에게 탕왕과 무왕이 행한 방벌(放伐)을 의전으로 옹호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맹자의 방벌옹호론은 그의 인성론과 천명론에 일관된다. 가변적이고 개방적인 맹자의 천명론에 비추어 볼 때 신민의 복종과 지지는 언제든지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신민은 자신들의 본능적 욕망과 도덕본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군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를 유덕자로 받아들인다. 결국 천명으로서 민의는 유덕자에게 전환되기에 부덕한 군주를 제거하고 새로운 군주로 교체하는 방법의 방식이란 정당한 것이다. 윤대식, “맹자의 전쟁과 반전쟁,”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2003), pp. 13-14.

140)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의 서구적 연원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비롯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의전론의 최초 이론 확립자이자 전쟁에 대한 서구 기독교적 사유를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관점을 살펴보게 되면 후대 ‘justum bellum’ 이론의 구성자들조차 실제 어떤 전쟁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추종자들이 아니라는(un-Augustinian) 역설을 가져왔다. 이 점에서 ‘justum bellum’은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 아니라 ‘정당화된 전쟁’(justified war)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확할 것이다. Paul Ramsey, “The Just War According to St. Augustine,” Jean Bethke Elshtain ed., *Just War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1992), p. 8.

을 행하고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사랑하고 아우는 공경하는 것이 이른바 여섯 가지 순리”¹⁴¹⁾라는 석작(石鵠)의 간언은 『左傳』이 상기시키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위환공 시해 이후 “장차 먼저 군주의 정나라에 대한 원한을 풀어 제후들의 충애를 구하고 그것으로 백성과 화합하려 하는”(將修先君之怨于鄭，而求寵於諸侯，以和其民. 『左傳』「隱公4年」) 주우의 의도에 석작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동맹국인 진나라와 협의해서 주 천자를 만날 것을 제안하면서 진나라에 주우와 자신의 아들을 죽이도록 요청함으로써 내분을 종결시킨다. 『左傳』은 이 과정을 군자(君子)의 말을 빌려 “대의를 위하여 육친을 멸한다 함은 이를 두고 이르는 말”(大義滅親，其是之謂乎)로 평가한다. 『左傳』은 여전히 공적 영역에 올바른의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를 표출한 셈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올바른의 기준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올바르지 않았음에도 올바름으로 합리화했던 패자의 전쟁은 무엇이 있을까? 그 사례는 진문공(晉文公)에서 찾아진다. 『左傳』은 진문공의 등장(B.C. 635)을 기존 패자와의 호혜적 관계로부터 일관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제환공과 송양공이 딸을 주고 말 20송을 주었던 점, 초성왕의 후대에 진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에서 90리를 물러날 것을 약속한 점, 진목공이 딸 다섯을 붙여주고 3천의 호위병을 붙여 진나라로 들여보낸 일과 위문공(衛文公)-조공공(曹共公)-정문공(鄭文公)의 무례함은 진문공의 규범성과 폭력성-보은과 복수-을 예단한다(『左傳』「僖公23年」).

그런데 진문공의 규범성은 기만적이다. 노희공 24년 감나라 소공과 적인들에 의해 천자가 도망가서 범(汜) 땅에 머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진목공이 군사를 하상으로 출동시켜 천자를 서울로 들여보내려 하자, “제후들을 따르게 하기 위한 일로는 천자를 위하는 일만한 것이 없고 천자를 위한 일은 제후들을 믿게 하며 그것이 큰 의리”(求諸侯，莫如勤王。諸侯信之，且大義也. 『左傳』「僖公25年」)라는 호언의 조언에 따라 진문공은 진나라 군사의 출동을 중지하게 하고 천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감으로써 보상으로 영토 확장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비록 주 천자에 대한 존왕(尊王)에 충실한 ‘올바른’ 선택일지라도, 영토 확장이라는 보상을 요구하는 진문공의 행위는 존왕양이의 명분수행이 도덕적 동기에 따른 자발적인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물론 진문공 역시 규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그의 규범성은 예제의 실질과 다른 동기에 근거한다. 원(原)을 포위 공격하는데 사흘 분량 식량만을 준비하도록 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항복 선언을 기다려 달라는 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보배이며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信，國之寶也，民之所庇也. 『左傳』「僖公25年」)이라는 진문공의 답변과 달리 원을 지킬 수령으로 “항아리에 밥을 가지고 군주님을 따르다가 뒤처지자 지름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 배가 고프지만 그 밥을 먹지 않았던”(以壺飧從，徑，餒而弗食. 『左傳』「僖公25

141) 『左傳』「隱公3年」，“石碻諫曰 … 君義，臣行，父慈，子孝，兄愛，弟敬，所謂六順也.”

年) 조쇠(趙衰)를 임명한 것은 군신 간 규범적 관계의 유지라는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원과의 약속은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뒤에 두었던 진문공의 기만적 규범성에 기인한다.

진문공에 의한 새로운 규범은 초성왕과의 ‘성복(城濮)전투’(B.C. 632)를 통해 패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초성왕의 송나라 포위에 개입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나라의 선진(先軫)은 “전에 베풀어 준 은혜에 보답하고 그 나라의 환난을 구원하여 나라의 위세를 보여 패자의 위치를 굳힐 기회”(報施、救患、取威、定霸、於是乎在矣. 『左傳』「僖公27年」)라고 적극 개입을 강조한다. 선진의 조언은 패자의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현실적,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곧 이어진 조처는 기존 패자인 제나라와의 염우(斂盂) 동맹(『僖公27年』)이었다. 더욱이 초성왕의 대응은 진문공을 “험악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여러 가지 곤란을 갖추어 맞보았으니 백성의 진정과 거짓을 다 알고 있는”(險阻艱難, 備嘗之矣; 民之情僞, 盡知之矣. 『左傳』「僖公28年」) 유덕자로 평가하며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그 증거는 진문공의 약속이행으로 전개된다. “초나라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고 세 번 막사를 거두어 후퇴해서 초나라 군사를 피하는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 만약 우리의 후퇴에도 초나라 신하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군주의 군사가 후퇴했는데도 초나라 신하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니 잘못된 길을 걷는 것 저쪽”¹⁴²⁾이라는 자범(子犯)의 해명은 전쟁조차 예제의 규범에 부합하는 것임을 웅변하는 듯이 보이지만 군주 간 약속의 이행과 함께 군신 간 규범의 일탈을 초나라의 자옥(子玉)에게 전가함으로써 진문공의 군사적 승리가 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나라에 보은해야 하는 규범과 패자의 지위획득이라는 이익의 갈등에서 “초나라 군주가 베풀어 준 은혜는 아직 감히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있다”(楚君之惠, 未之敢忘, 是以在此. 『左傳』「僖公28年」)는 진문공의 대답은 이율배반적이다. 왜냐하면 성복 전투의 승리 직후 천토동맹에 천자를 불러들여 주 천자로 하여금 “천자의 명을 공경스럽게 복종하여 그것으로 사방의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천자에게 잘못하는 자를 바로잡아 줄 것”(敬服王命, 以綏四國, 糾遘王慝)을 인정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요함으로써 패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비례(非禮)를 보인 동시에 초나라 자옥의 자살에 “나에게 해독이 되는 자가 없어졌다”(莫余毒也已)고 기뻐하는 진문공의 모습은 “진나라는 이 싸움에서 덕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謂晉於是役也, 能以德攻. 『左傳』「僖公28年」)는 군자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폭력성을 규범으로 은폐하는 것이다.

성복 전투 직후 진문공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온(溫)의 동맹’ 자체가 “진나라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를 토벌하려는 것”(冬, 會于溫, 討不服也. 『左傳』「僖公28年」)이었다는 『左傳』의 설명은 “제환공은 제후들과 회합하여 이성의 나라들을 봉했는데 지금 군주께서는 제후들과 회

142) 『左傳』「僖公28年」, “子犯曰, 微楚之惠不及此, 退三舍辟之, 所以報也 … 若其不還, 君退臣犯, 曲在彼矣.”

합하여 동성의 나라들을 멸망시켰다”(齊桓公爲會而封異姓，今君爲會而滅同姓。『左傳』「僖公28年」)는 조나라 후누(侯孺)의 지적과 더불어 진문공의 패권적 질서가 제환공의 규범성과 달리 폭력성을 동기로 했던 내면을 적시한다.

2. 규범과 폭력의 균형으로서 초장왕의 패

그렇다면 실질조차 올바른 가치에 부합했던 규범과 폭력의 균형을 보여준 전형적인 패자의 전쟁도 존재했을까? 그것은 초 장왕(楚莊王)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성복 전투 이후 진·초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장왕의 등극과 함께 조나라 역시 대기근과 주변 열국의 침공으로 인해 패자 간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이후 초장왕의 내정수습과 주변 열국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양자는 충돌하고 결과적으로 초장왕의 패권획득을 가져온다. 그 단서 역시 진나라의 일탈에 기인한다.

노선공(魯宣公) 즉위년 “조나라 자작이 정나라 사람과 진나라를 침공하고 마침내 송나라도 침공했다. 조나라 조돈이 군사를 거느리고 진나라를 구원했다 … 진나라 사람과 송나라 사람이 정나라를 정벌했다”(楚子鄭人侵陳，遂侵宋。晉趙盾帥師救陳 … 晉人宋人伐鄭)는 경문은 외형상 조나라의 동맹국 침공에 진나라의 응징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초장왕의 진·송 침공과 진나라의 대응은 역사적 연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주목할 사실은 정나라의 개입이다. 왜 정나라는 조나라와 동맹을 체결한 것일까? 『左傳』은 그 배경을 “송나라 사람이 그의 군주인 소공을 시해하자 진나라 순임보가 제후들의 군사를 이끌고 송나라를 정벌했다. 송나라는 진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송문공이 진나라의 명령을 받기로 맹서했다. 또 제후들과 호에서 회합하여 장차 노나라를 위해 제나라를 토벌하려다가 제후들이 모두 뇌물을 받고 돌아갔다”¹⁴³⁾고 설명한다.

사실 송소공의 시해사건은 3년 전에 그의 조모이자 주 천자의 딸인 양공의 부인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고 송문공의 계승을 인정했기 때문에 『左傳』조차 “경에 각 나라의 경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 정당함을 잃었기 때문”(猶立文公而還。卿不書，失其所也。『左傳』「僖公17年」)이라고 평가했던 일이다. 따라서 송나라에 대한 진나라의 군사적 응징이 정당하다고 동의한 송문공의 맹서로 종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후 문책에 불과했을 뿐이며, 제나라에 대한 응징조차 제후들의 사적 욕망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도 진나라의 의무 방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일련의 사건전개 과정을 통해 진나라의 조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정목공은 진나라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초나라와의 맹약을 받아들였던 것이다(鄭穆公曰，晉不足與也。遂受盟于楚。『左傳』「宣公1年」). 따라서 원인제공은 진나라의 규범

143) 『左傳』「莊公27年」，“宋人之弑昭公也，晉荀林父，以諸侯之師，伐宋。宋及晉平，宋文公受盟于晉。又會諸侯于廬，將為魯討齊，皆取賂而還。”

일탈인 셈이다.

정나라의 배반은 진나라의 정나라 정벌을 가져왔고 초나라의 개입으로 북림(北林) 전투로 확대된 이후 진나라가 패배함으로써 다시 진나라의 복수로 정나라 정벌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左傳』은 “진나라 후작은 사치를 일삼았다. 조돈이 정치를 담당하면서 자주 군주에게 간했으나 군주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진나라는 초나라와 세력을 겨루지 못했다”(於是晉侯侈，趙宣子爲政，驟諫而不入，故不競於楚. 『左傳』「宣公1年」)고 평가함으로써 초장왕의 승리가 진나라의 규범적 일탈에 따른 권위의 붕괴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진·초 간 패권전쟁의 절정은 진나라의 동맹인 진(陳)의 군주시해 사건인 하징서(夏徵舒)의 난에서 비롯한다. 노선공 10년 “계사일 진나라 하징서가 군주인 평국을 시해했다”(癸巳陳夏徵舒弑其君平國)는 경문은 진영공(陳靈公)이 신하들과 함께 하희(夏姬)와 통정하고 서로 희롱함으로써 하징서가 영공을 활로 쏘아 죽인 사건을 가리킨다. 그런데 진나라는 동맹이자 패자로의 응징을 가하지 않았던 반면, 초장왕은 하징서를 죽여 시체를 찢는 형벌로 응징하고 진나라를 병합하면서 “하징서가 부도하여 그 군주를 죽여서 과인이 제후들을 이끌고 토벌하여 그를 죽였다”¹⁴⁴⁾고 진나라 정벌과 하징서 응징을 패자의 책무이행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초장왕은 진릉(辰陵) 맹서(B.C. 598)를 통해 정나라와 동맹을 체결하는데, 정나라의 배반으로 초나라의 정나라 포위가 전개되면서 이를 구원하려는 진나라와 ‘필(邲)의 전투’(B.C. 597)를 치른다.

『春秋』는 이 사건을 “여름, 6월, 을묘일, 진나라 순임보가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 자작과 필에서 싸웠는데 진나라 군사가 크게 패했다”(夏，六月，乙卯，晉荀林父帥師及楚子戰于邲，晉師敗績)라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당시 이미 초나라와 정나라의 동맹체결과 인질교환이 이루어지고 화평을 맺은 상황이기에 진나라의 순임보는 충돌을 유예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순임보의 신중함과 초장왕에 대한 중군대장 사회(士會)의 평가는 『春秋』가 기대하는 패자의 균형 잡힌 합리성을 반영한다. 사회는 “초나라 군사가 정나라를 토벌한 이유는 정나라가 두 마음을 가진데 대하여 노했기 때문이고 토벌하고는 정나라 군주가 몸을 낮추는 태도를 보고 가엽게 여겼으니 배반하므로 그를 정벌하고 굴복하므로 그를 용서했으니 덕과 형벌을 잘 이룬 것”(楚軍討鄭，怒其貳而哀其卑。叛而伐之，服而舍之，德刑成矣. 『左傳』「宣公12年」)이라고 평가하고 전쟁방지를 건의한다.

『左傳』에서 진나라 사회의 말을 빌려 “초나라 군주가 인재를 등용하면서 동성인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을 가려 쓰고 이성이면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을 등용하며 인재를 등용함에 덕을 잃는 일이 없고 상을 주는데 공로자를 빠뜨리는 일이 없으며 늙은이에게 혜택을 주며 외국에서 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유롭게 살도록 합니다 ... 덕이 확립되어 있고 형벌이 잘 행해지고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일들이 다 시절에 맞고 법이 지켜지고 예의가 잘

144) 『左傳』「宣公11年」, “曰，夏徵舒爲不道，弑其君，寡人以諸侯討而戮之。”

행해진다”¹⁴⁵⁾고 소개한 초장왕의 모습은 새로운 패왕(霸王)과 패정(霸政)의 본질을 반영한다.

이미 『左傳』에서는 진나라가 패권행사의 선행학습으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 노문공 7년 위(衛)나라에 영토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조돈에게 “배반하는 자를 토벌하지 않고 무엇으로 위엄을 보이고 복종하는 자를 부드럽게 대하지 않고 무엇으로 어루만져 달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위엄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달래는 것도 아니면 무엇으로 덕을 보이며 덕이 없으면 무엇으로 패자노릇을 하겠습니까?”¹⁴⁶⁾라고 충고한 진나라 극결의 인식은 패자의 규범성이 폭력과 도덕의 균형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즉 『左傳』이 의도한 것은 춘추시대의 전쟁과 혼란, 그리고 일탈적 패권행사의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패자의 권위의 원천이 형덕이병(刑德二柄)으로 새롭게 교합된 규범(hybrid norm)임을 반증한다.

초장왕의 올바른 동기를 확인하는 것은 승리 이후 진나라 군사의 시체를 거두어 큰 무덤을 만들어서 구경거리로 삼도록 하자는 건의에 반대하는 논리에서 드러난다. “대저 문자에서 과를 쓰기를 멈춘다는 뜻에서 무자가 만들어진 것 … 무라는 것은 난폭한 자를 억누르고 무기를 거두어 싸움을 중지하고 큰 나라를 보유하고 공훈을 세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만민을 화락하게 하고 재물을 풍부하게 하는 것 … 지금 진나라에는 죄로 삼을 것이 없고 백성들은 모두 충성을 다하여 군주의 명에 따라 죽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의 시체로 큰 무덤을 만들어 구경거리로 삼겠는가?”¹⁴⁷⁾라는 장왕의 답변은 전쟁승리 후 제사에 희생을 올렸던 진문공의 행위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더 나아가 초장왕은 필의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 패업을 이룬 후 6년 뒤(宣公18年)에 사망하는데, 패자로 회맹을 주도하거나 주 천자로부터 패자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준 받지 않았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초나라의 패업 자체가 예제의 외연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했기에 이를 유지하는 책무와 모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¹⁴⁸⁾ 그렇게 보자면 『左傳』은 진나라의 일탈적 패권행사와 대조적으로 초장왕의 예견된 승리와 패자의 지위획득 자체를 ‘올바른 동기’에서 비롯한 논리적 귀결로 인정한 셈이다.

145) 『左傳』「宣公12年」, “其君之舉也, 內姓選於親, 外姓選於舊, 舉不失德, 賞不失勞. 老有加惠, 旅有施舍 … 德立刑行, 政成事時, 典從禮順.”

146) 『左傳』「文公7年」, “晉卻缺言於趙宣子曰 … 叛而不討, 何以示威? 服而不柔, 何以示懷? 非威非懷, 何以示德? 無德, 何以主盟?”

147) 『左傳』「宣公12年」, “夫文, 止戈爲武 … 夫武, 禁暴, 戢兵, 保大, 定功, 安民, 和衆, 豐財者也 … 今罪無所, 而民皆盡忠以死君命, 又可以爲京觀乎?”

148) 초장왕의 행태가 기존 패자의 양상과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원제후의 정신적 유대의 근원인 주 왕실이 명분과 실제의 양면에서 존재 의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부터 초나라가 지닌 중원과 다른 정신적 배경이다. 이로 인해 초장왕은 기존 중화적 사고방식으로 제후들을 회맹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중원 제후의 입장에서 야만시하던 초나라의 중원진출과 패자 획득은 중원이 곧 중화라는 의식을 옅어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가이즈카 시케키·이토 미치하루, 배진영·임대희 옮김, 『중국의 역사-선진시대』 (서울: 혜안, 2011), pp. 266-267.

V. 결론

춘추시대의 열국 목표는 국가생존이었다. 비록 외형상 기존 주 왕실에 대한 존중과 동성 제후들의 협력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저변에 작동하는 원리는 명분확보에 따른 국가 이익의 추구였다. 따라서 더 이상 주 왕실-열국 관계가 후원자-번영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구심점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패’로 귀결되었다.

그렇다면 ‘패’는 주 천자를 대신해서 존왕양이, 존망계절의 책무를 이행한 도덕적 완결성과 정치적 실력자였던 것일까? 만약 이러한 평가가 합당하다면 ‘패’는 물리적 폭력조차도 공적 이익만을 위해 사용했던 행위자일 것이며, 그 전범은 주공(周公)에서 찾아질 것이다. 그러나 춘추시대 패자로 명명된 행위자 모두 주공과 비교된 적이 없으며, 공자 역시 춘추시대의 패자들을 주공이 구축한 예(禮)로부터 이탈한 존재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편찬한 『春秋』의 경문이 패의 행위에 대해 기록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시도한 『左傳』은 패의 행적을 왜 그리 집요하게 추적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그들이 명명한 춘추의 시대가 주 왕실을 정점으로 하는 주례적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행위규범과 실천양상을 지녔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현실정치에서 더 이상 도덕적 이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공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폭력의 사용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을 적시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럴 경우 『左傳』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해석을 통해 권선징악을 도모하는 교훈이나 춘추필법으로 대변되는 미언대의(微言大義)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현실정치의 작동원리인 노골적인 폭력과 전쟁이 문제해결 기제로의 적절성을 지녔음을 은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일 수 있다. 즉 도덕과 전쟁을 얼마나 정합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현실의 정치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제임을 포착했던 것이며, 이후 통치자에게 그 내면의 원리를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竹書紀年』, 『國語』, 『史記』, 『左傳』.

김충렬. 1996. 『중국철학사 1』. 서울: 예문서원.

안춘분. 2010. 「『春秋』로 본 제후 제환공과 진문공의 정명론」. 『유교사상연구』 42집.

107-143.

- 엄연석. 2003. 「『春秋』에서 신뢰개념과 정치적 이상」. 『중국학보』 48집. 623-644.
- 윤대식. 2004. 「동맹에서 부국강병으로」. 『국제정치논총』 44집 3호. 7-24.
- 이춘식. 2006.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형성과 조공외교」. 『동양정치사상사』 5권 2호. 193-221.
- 정태현 역주. 2001. 『譯註 春秋左氏傳 1』. 민족문화연구회.
- 제해성. 2010. 「『左傳』의 저자와 저작시기에 관한 검토」. 『중국어문학논집』 64호. 535-552.
- 채이병. 2004.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평화의 문제」. 『철학』 78집. 75-102.
- 楊伯峻 編著. 2000. 『春秋左傳注 1』. 北京: 中華書局.
- 余英時. 1982. 『史學與傳統』. 臺北: 時報文化出版.
- 洪亮吉 撰. 李解民 點校. 1987. 『春秋左傳詁』. 北京: 中華書局.
- Hsü, Cho-yun. 1965. *Ancient China in Transition: An Analysis of Social Mobility, 722-222 B.C.*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sü, Cho-yu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in Michael Loewe and Edward L. Shaughnessy (eds.).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 Edward Lewis. 1999. *Writing and Authority in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ines, Yuri. 2000. "The One That Pervades the All in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 The Origins of The Great Unity Paradigm." *T'oung Pao*. Vol. 86. 280-324.
- Ramsey, Paul & Hauerwas, Stanley. 2002. *The Just War: Forc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Rowman & Littlefield.
- Wing-tsit Chan. 1989. *Chu Hsi: New Studi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가이즈카 시케카·이토 미치하루. 배진영·임대회 옮김. 2011. 『중국의 역사-선진시대』. 서울: 해안.
- 로타 본 팔켄하우젠. 심재훈 역. 2011. 『고고학 증거론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서울: 세창출판사.